

「한민족 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1991. 12.

尹 德 熙(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金 圭 倫(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要 約

I. 序 論

本稿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政策立案 資料開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社會·文化·經濟分野에서의 구체적 交流·協力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교류·협력이 갖는 意味와 교류·협력 추진의 基本方向 및 接近方法 을 고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적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경제분야 상호간의 波及效果 를 극대화하기 위한 綜合的인 方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民族共同體」 실현을 위한 交流·協力의 意義와 方向

1. 交流·協力의 意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民族共同體」 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민족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 는 실현방법상 비정치분야 위주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와 정치·이념분야의 「정치공동체」로 구분되어야 하는 바, 「정치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궁극적인 통일실현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별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남북간 사회·문화·경제교류·협력의 의의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즉 「南北交流·協力期」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갈등요소를 제거하고 남북간 信賴造成과 關係正常화의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유도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조성에 기여한다. 「南北聯合期」에서는 民族同質性回復과 남북간 경제·사회제도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통일국가 수립에 대비한 내적 기반을 조성한다.

2. 교류·협력의 推進方向

民間交流優先의 원칙하에 민간교류의 축적을 통해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과 교류원칙에 대한 基本合意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교류 주체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民族的 同質性을 공유하고 있고 理念的 對立이나 葛藤의 소지가 적은 분야, 實現可能性이 높은 분야 그리고 波及效果가 비교적 큰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 교류·협력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접근형태에 따라 초기에 「間接形·國際形·物的 交流」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直接形·國內形·人的 交流」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내용 및 파급 효과에 따라 경제분야에서는 「援助的·水平的」 교류·협력에서 출발하여 「援助的·垂直的」, 「經濟的·水平的」, 「經濟的·垂直的」 교류·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理念的·非競爭的」 분야부터 시작하여 「非理念的·競爭的」, 「理念的·非競爭的」, 「理念的·競爭的」 분야의 순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셋째, 지향성에 따라 「非理念性·相互補完性 指向」, 「異質的 要素의 克服」, 「同質性 回復·發展」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한다.

단계적 교류·협력전략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단계는 「交流基盤 構築段階」, 「共同協力 形成·推進段階」, 「交流·協力體制確立段階」의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III.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分野別 交流·協力方案

1. 經濟分野

가. 推進方向

남북간 經濟交流·協力 發展段階은 구체적으로 「① 間接交易

→ ② 直交易 → ③ 經濟的 便宜施設의 相互供與 → ④ 제 3
국에의 合作投資 → ⑤ 資源의 共同開發 → ⑥ 資本 및 技術
合作」의 6단계로 상정할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援助性 經濟交流 및 北한의 입장을 감안한
水平的 交流·協力を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점진적
으로 남북한 경제의 相互補完性 및 經濟性에 기초한 垂直的
分業形態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經濟交流·協力의 波及效果가 北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北한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北한의 交易相對로서 남한
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南北 經濟交流·協力を 活性化하기 위하여는 上記의 原則에
의거한 段階的 接近과 함께 狀況變化에 伸縮的으로 對應하기
위한 多段階的 同時推進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段階別 推進方案

◦ 제 1 단계：間接交易

- 生필품 및 의약품 위주의 援助性 物品 제공
- 해외교포를 이용한 仲介貿易
-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三角貿易

◦ 제 2 단계：直交易

- 求償貿易, 제품재구매거래방식 활용
- 南北協力基金 적극 활용

- 清算計定 설치
 - 남북한 經濟交流仲裁委員會 등 설치
- 제 3 단계: 經濟的 便宜施設의 相互供與
 - 남북한 商品常設展示場, 物品交易所 등 설치
 - 交通·通信網 연결
- 제 4 단계: 제 3 국에의 合作投資
 - 戰略的 合作: 아프리카 및 인도지나반도 국가들에 대한 합작투자
 - 經濟性 合作: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 제 5 단계: 資源의 共同開發
 - 지하자원·어족자원의 공동개발
 -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 서해안지역의 농업관개망 연결 공동추진
- 제 6 단계: 資本 및 技術合作
 - 對北韓 借款 공여
 - 남북한 合作銀行 설립
 - 國濟經濟機構에의 남북한 單一議席 가입

2. 學術·科學分野

가. 推進方向

理念論爭의 소지가 적은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學術大會를 통하여 남북간 교류·접촉기회를 확대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남북간 교류가 한반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고, 남한내의 학술·과학분야 연구에 북한 학자 및 과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歷史學 및 考古學分野에서는 역사관의 대립이 비교적 첨예 하지 않은 문화사, 고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言語學分野에서는 이질화된 언어구조 통일을 목표로 교류를 추진한다. 그리고 科學·技術分野의 교류는 장기적으로 남북간 학문체계와 기술적 기반을 통일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교류가 학문 외적인 분야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特定分野의 特定主題를 설정하여 교류대상화한다.

나. 段階別 推進方案

- 제 1 단계: 자료교환 및 남북학자 접촉·교류
 - 각종 학술회의 상호초청 추진
 - 국제학술회의 및 재외동포 주최 학술대회에 남북 공동참여
- 제 2 단계: 남북한 공동조사·연구사업 실시
 - 고대사, 언어학, 생태계, 과학·기술분야 공동조사·연구
 - 한국의 과학재단과 북한과학원의 교류 추진
- 제 3 단계: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모색
 - 학자·학생 교환사업 추진

– 교과서·사전 공동편찬

3. 文化·藝術分野

가. 推進方向

남북간 문화·예술교류의 양측의 文化的 異質性이 극명히 노출될 가능성이 큰 바, 직접교류 이전에 간접교류를 통한 사전 整地作業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참여를 위하여 남북간 교류는 한반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질화된 요소가 많은 현대문화·예술보다는 분단 이전의 傳統的 要素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분야와 人的 經驗을 바탕으로 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화·예술교류에는 순수문화·예술 이외의 문제가 개재될 가능성이 큰 바, 일관성 유지 및 문화·예술적 다양성 수렴 차원에서 交流·協力を 전담할 單一機構를 설립, 정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나. 段階別 推進方案

- 제 1 단계: 자료교환 및 간접적 접촉
 - 무대예술의 소품자료, 순수기록영화필름, 전통예술의 문헌
 - 자료와 민속연구물 교환
 - 국제 또는 해외교포주최 문화·예술행사 공동참여

- 제 2 단계: 공동조사·연구
 - 민족문화 공동연구 및 교환전시회 개최
 - 무대예술 교환공연
- 제 3 단계: 공동합작
 - 문화·예술행사 공동개최
 - 문화·예술 공동조직 결성
 - 해외전시회·공연 공동개최

4. 體育分野

가. 推進方向

초기단계에는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감정유발이 쉬운 종목은 가급적 피하고 심판의 판정이 용이하며, 남북간의 실력이 비슷한 교류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초기단계에는 배구·탁구·배드민턴 등 구기종목과 기록경기 교류를 추진하고, 투기종목과 농구·핸드볼 등 구기종목은 교류가 성숙된 다음에 추진한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교류를 남북한 내부에서의 교류로, 단일종목별 교류에서 종합대회 차원에서의 교류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장기적으로 체육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나. 段階別 推進方案

- 제 1 단계: 교류기반 구축
 - 남북한 개최 국제행사에 상호참가
 - 친선시범경기 교환 개최
 - 이북 5도민 체육대회 개최
- 제 2 단계: 공동협력 형성·추진
 -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 체육관계자의 상호방문 및 지도자 교환
- 제 3 단계: 교류·협력체제 구축
 - 남북 단일팀 구성 정례화
 - 남북한 지역에 체육시설 공동건설
 - 국제체육행사 공동유치 및 공동주최

5. 觀光分野

가. 推進方向

관광분야 교류·협력에 있어 북한에 交流의 必要性을 인식 시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남북간 관광관계자들이 접촉, 관광자원 상호평가단을 구성하고 관광자원 개발 현황자료를 교환하는 동시에,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經濟的 實益이 북한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이를 감안할 때, 남북간 교류는 북한에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觀光資源의 共同開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段階別 推進方案

- 제 1 단계: 자료교환
 - 관광자료 교환 및 관광토산품 교류
 - 관광자원 상호평가단 구성
 - 외국인 자유왕래지역 설정
- 제 2 단계: 공동조사·연구
 - 남북한 공동주최 관광박람회 개최
 - 국제학술회의 개최
 - 관광실무단 상호교류
 - 관광자원 공동조사
- 제 3 단계: 공동합작 및 인적 교류 확대
 -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 관광자원 공동개발 추진
 - 남북간 항공기의 공동취항 추진
 - 비자발급 제한요건의 점진적 해소
 - 남북간 관광단 구성, 상호교류

6. 言論·放送分野

가. 推進方向

언론·방송분야는 남북간 교류에 있어서 가장 政治性과 理念性을 내포하기 쉬운 분야로 政治的인 宣傳에 이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교류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細部方針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여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진척되어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시점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방송연맹」(ABU)과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간접적 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간접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교류순서는 정치적·이념적인 내용이 배제된 體育·文化行事 등의 보도자료, 신문·잡지 등 印刷媒體의 교환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라디오 및 TV와 같은 映像媒體 교류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인적 교류는 이러한 물적 교류가 성숙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나. 段階別 推進方案

- 제 1 단계: 교류기반 구축
 - 언론교류에 관한 원칙 합의
 - 비정치적인 내용의 보도자료 교환
- 제 2 단계: 공동협력 형성·추진
 - 언론인 상호접촉
 - 외국기자 동시초청 및 자유취재 보장
 - 남북 언론인 상호초청 및 비정치분야 취재 추진
 - 상호 모략·비방방송 중지
 - 방송 부분청취 허용

- 제3단계: 교류·협력체제 확립

- 방송 자유청취 허용
- 방송통신·기술 공동연구
- 공동취재단 구성

7. 宗教分野

가. 推進方向

북한에는 종교가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남한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종교 및 교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각 종교단체가 각기 독자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單一組織과 機構를 가진 천주교나 「한국교회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간 긴밀한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세확장 차원이 아닌 민족 화해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 平和宣教 차원의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나. 段階別 推進方案

- 제1단계: 교류기반 구축

- 종교서적 등 물적 교류
- 남북 종교인 접촉 추진
- 남북 합동의식에 상호초청

- 제2단계: 공동합작 형성·추진

- 남북 합동의식 상호교환 개최
- 종교성지 교환순례
- 제3단계: 교류·협력체제 확립
 - 협동기도원 건립추진
 - 성서·경전 공동편찬사업 추진

IV. 結論

1. 交流·協力方案이 統一環境에 미치는 波及效果

가. 경제 교류·협력방안의 波及效果

남북한과 중국 3자간 무역을 통해 북한의 생필품 부족을 해소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남북간 직교역을 통한 남한 공산품의 북한 유입은 북한주민에 比較概念을 제공할 것인 바, 이는 북한의 改革·開放을 촉진시킬 것이다.

제3국에 대한 합작투자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國際的 協調를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노동인구의 상호 접촉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異質性 克服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합작기업의 운영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資本主義 企業原理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經濟的 利益을 남북한이 공유함으로써 북한경제 발전 및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남북간 생활수준 격차 감소는 향후 統一費用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간 기술·자본합작을 통해 經濟統合에 대비한 남북간 產業構造 調整基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문화 교류·협력방안의 波及效果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실정에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政治社會化와 宣傳策動 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폐쇄된 북한사회에 開放社會의 生活과 價值를 유입시킴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批判意識을 촉진할 것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켜 개방화를 촉진·유도할 것이다.

교류·협력을 통하여 民族 同質性의 근거를 상호 확인함으로써 緊張緩和와 信賴構築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상호접촉을 통한 불신해소와 유대강화로 남북간 單一文化圈 형성이 촉진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남북간 이념적·감정적 대립을 완화함으로써 政治分野를 포함한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확대시킬 것이다.

2. 波及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綜合的 方案

가. 遷迴的 接近方案

(1) 海外僑胞 活用方案

남북간 인적 교류에 있어서 해외교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소련거주 교포나 在日 조총련계 교포들을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활용한다. 현단계에서는 직교역보다 해외교포들을 통한 교류·협력이 현실성이 있는 바, 이들의 對北韓 交易 및 合作을 적극 지원한다.

(2) 第3國 活用方案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中·蘇·日 등의 協調를 얻는 우회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바, 한국은 특히 中國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중국이 북한에 대한 改革·開放壓力을 가해 주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추진시 한국이 합작투자한 中·蘇의 經濟特區에서 생산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함으로써 북한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韓·中·日이 주축이 되는 東北亞經濟圈과 관련된 學術會議를 개최, 북한학자 및 경제인의 참여를 유도한다. 회의 참여 인사의 범위는 초기에는 민간단체를 주로 하고 점진적으로 정부 관련인사들의 참여로 확대한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에서 남북한 商品展示會를 공동개최하여 남북한 경제인의 접촉기회를 확대한다.

나. 남북한 共同事業 推進方案

(1) 南北間 姉妹結緣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남북간 이

질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간, 비수익성단체간, 대학간,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한다.

(2) 示範都市의 건설·운영

남북간 이질적 요소를 포용·융화하여 한민족 공동체적 삶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平和市」와 같은 시범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① 비무장지대내에 자족적 기능을 갖춘 國際的 開放都市 건설, ② 人的·物的 交流窓口 설치, ③ 민족화합과 전통문화의 계승·창달을 위한 文化空間 설치, ④ 공동연구시설, 합작공장, 국제요양소 설치, ⑤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公共機關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3. 우리의 對備策 및 與件造成方案

가. 國內法 정비문제

현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國內法으로는 「國家保安法」과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이 있는 바, 「국가보안법」의 「反國家團體」 규정과 「남북교류협력법」상의 北韓訪問 許可制 및 身邊保障覺書 要求條項 등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축할 소지가 있어서 이의 수정·보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조항의 수정·보완 및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현재까지도 남북 교류·협력을 對南革命

戰略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정비작업은 남북 관계 진전 및 북한의 상응하는 정책전환 여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窓口單一化 문제

정부는 다양한 민간교류주체들의 경쟁적인 대북 교류·협력 제의를 조정·체계화하고 교류·협력에서 예상되는 제반 부작용을 예방 또는 극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창구단일화 원칙을 고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창구단일화 원칙의 적용과 정부의 역할은 다원주의적인 사회의 개방성을 수용하여 민간교류주체들의 자율적인 대북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 南北協力基金 조성·활용

남북협력기금은 한국이 단독으로 조성한 기금이므로 북한에 제의하여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統一基金으로 확대하고, 통일기금은 남북합작의 각종 收益事業(예: 예술단 공연, 스포츠 행사 등)과 남북 경제교류·협력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적립하여 마련한다.

남북간의 통일기금은 ① 이산가족 찾기, 상봉사업 및 이산 가족 왕래, ② 남북한 공동참여 국제학술·체육·문화행사, ③ 남북한의 빈민구제사업 및 이재민·수재민 구호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활용될 수 있다.

라. 研究支援 및 輿論收斂

북한의 經濟·社會·文化 實態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공동참여하는 북한연구관련 공동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國民輿論을 수렴하고 정부의 교류방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도출해야 한다.

마. 政治·經濟的 力量 強化

統一費用 부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건실한 발전이 요망되며,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 각 계층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한국은 특히 통일에 대비하여 첫째,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포기를 유도하고 낙후된 북한 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經濟成長과 國力伸張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력신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發展과 民主化를 이룩해야 할 것이며, 셋째,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과의 괴리로 야기된 사회갈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正義社會를 구현해야 할 것이며, 넷째, 통일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國際的 協力を 강화해야 한다.

目 次

| | |
|---|----|
| I. 序 論 | 1 |
| II. 「民族共同體」 실현을 위한 交流·協力의 意義와 方向 ... | 3 |
| 1. 「민족공동체」의 概念 및 交流·協力의 意味 | 3 |
| 가. 「민족공동체」의 概念 | 3 |
| 나. 交流·協力의 의미 | 4 |
| 2. 交流·協力의 基本方向 | 8 |
| 가. 方法論的인 시각에서의 考慮事項 | 8 |
| 나. 教育·협력의 推進方向 및 戰略 | 10 |
| III. 「南北 사회·문화·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分野別 交流·協力方案 | 18 |
| 1. 經濟分野 | 18 |
| 가. 推進現況 | 18 |
| 나. 推進方向 | 25 |
|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35 |
| 2. 學術·科學分野 | 55 |
| 가. 推進現況 | 55 |
| 나. 推進方向 | 58 |
|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64 |
| 3. 文化·藝術分野 | 66 |
| 가. 推進現況 | 66 |

| | |
|----------------------------------|-----|
| 나. 推進方向 | 67 |
|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73 |
| 4. 體育分野 | 74 |
| 가. 推進現況 | 74 |
| 나. 推進方向 | 76 |
|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79 |
| 5. 觀光分野 | 80 |
| 가. 推進現況 | 80 |
| 나. 推進方向 | 81 |
|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83 |
| 6. 言論·放送分野 | 84 |
| 가. 推進現況 | 84 |
| 나. 推進方向 | 85 |
|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89 |
| 7. 宗教分野 | 90 |
| 가. 推進現況 | 90 |
| 나. 推進方向 | 92 |
|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94 |
| IV. 結 論 | 96 |
| 1. 交流·協力方案이 統一環境에 미치는 波及效果 | 96 |
| 가. 경제 교류·협력방안의 波及效果 | 96 |
| 나. 사회·문화 교류·협력방안의 波及效果 | 98 |
| 2. 波及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綜合的 方案 | 100 |

| | |
|---------------------------|-----|
| 가. 迂迴的 接近方案 | 101 |
| 나. 南북한 共同事業 推進方案 | 104 |
| 3. 우리의 對備策 및 與件造成方案 | 108 |
| 가. 國內法 정비문제 | 108 |
| 나. 窓口單一化 문제 | 109 |
| 다. 南北協力基金 조성·활용 | 110 |
| 라. 研究支援 및 輿論收斂 | 111 |
| 마. 政治·經濟的 力量 強化 | 112 |
| ※ 參考文獻 | 114 |

I. 序 論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를 비롯하여 美·蘇 몰타정상회담에 서의 冷戰 終熄宣言, 獨逸統一, 蘇聯邦 解體 등 최근 국제정세는 급격한 脱冷戰的 變化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는 東北亞情勢에도 영향을 미쳐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구축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政治·軍事的 緊張緩和를 통한 關係改善 등 南北韓關係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같은 탈냉전적 국제정세 변화에 부응한 남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1988년 盧泰愚 대통령의 「7. 7 선언」과 유엔總會 특별연설(1988. 10. 18)을 통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緊張과 對決의 南北關係를 청산하고 交流와 協力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基本方向과 統一國家의 青寫眞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을 民族 共存共榮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겠다는 民族愛에 바탕을 둔 실천적이고 포괄적인 統一方案으로서, 統一過程 및 統一國家의 구성 그리고 統一國家의 未來像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함

에 있어 궁극적 통일목표를 「民族共同體」 형성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통일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과정으로서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國際情勢의 변화, 심각한 經濟難 및 정치·사회적 矛盾의 심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制限的이나마 開放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1년 하반기에 북한은 남한과 유엔에 同時加入하였으며 남북고위급회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남북한의 전반적인 관계증진 및 교류·협력 확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政策立案 資料開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交流·協力 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민족공동체」 실현과정에서 交流·協力이 갖는 意味와 역할, 교류·협력 추진의 基本方向 및 接近方法을 고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段階別 交流·協力 推進方案을 分野別로 제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경제분야 상호간의 波及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한 綜合的인 方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民族共同體」 실현을 위한 交流·協力의 意義와 方向

1. 「민족공동체」의 概念 및 交流·協力의 意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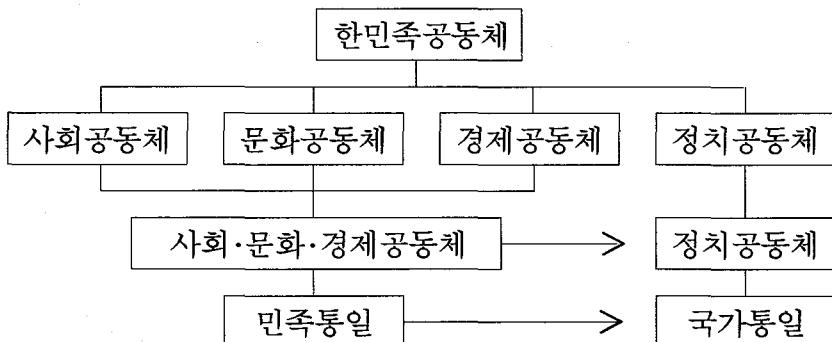
가. 「민족공동체」의 概念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民族共同體」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民族生活의 모든 分野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共同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분야별로 「經濟共同體」, 「文化共同體」, 「社會共同體」, 「政治共同體」로 구분된다.

한편 「民族共同體」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非政治分野 위주의 공동체인 「경제·사회·문화공동체」와 政治·理念分野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둔 「民族共同體」 실현은 「民族統一」로 상정할 수 있고,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한 「民族共同體」 실현은 「國家統一」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궁극적인 통일실현(「민족공동체」 형성의 바탕 위에 통일국가를 이루는 실질적인 통일) 이전의 中間段階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基盤造成段階와 「南北聯合」段階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民族統一」과 「國家統一」의 概念區分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하에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하는 「民族共同體」 형성 與件造成을 위하여 비정치분야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통일실현 이전에라도 民族成員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政治共同體」 또는 「理念共同體」 형성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生活共同體」 형성을 유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나. 交流·協力의 의미

사회·문화·경제분야에서의 交流·協力은 통일과정에서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手段이자 過程이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신과 대결을 지속해 온 남북간의 對決構造를 平和構造로 전환하고, 이질화된 민족사회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民族共同體를 형성·발전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統一國家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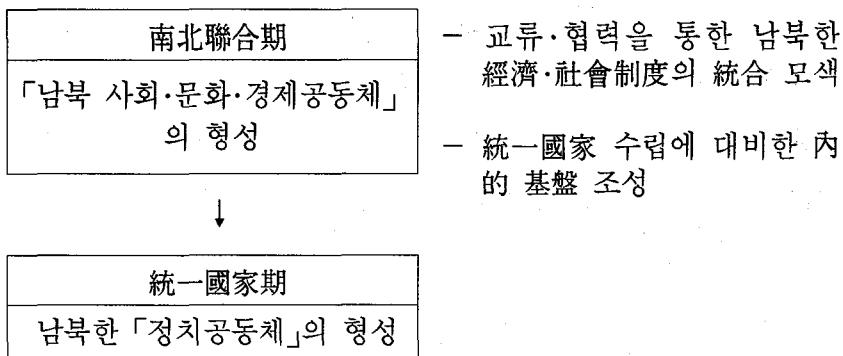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민족은 共同體關係를 회복·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共存共榮하며 民族的利益을 보존·확대하고, 특히 동북아지역 협력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國際的 地位와 役割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남북간 관계발전의 基本方向과 統一國家의 青寫眞을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信賴回復을 도모해 가는 가운데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民族共同體 憲章을 채택하고, 과도기적 통일체제인 「南北聯合」을 거쳐 완전한 統一國家를 수립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제시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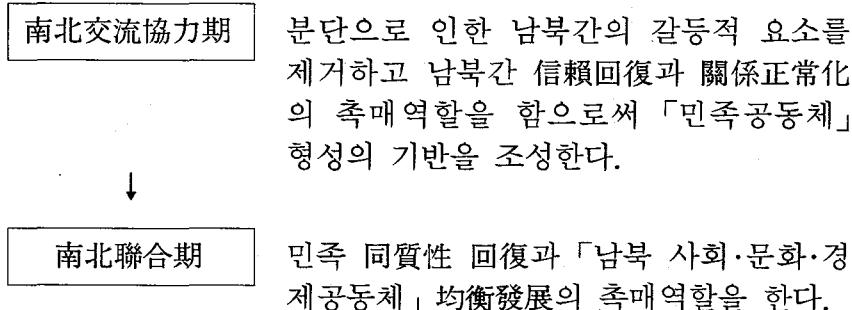
따라서 남북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의의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南北交流·協力期 | ↓ | - | 남북대화를 통한 南北關係正常化 |
|---------------------------------|---|---|-------------------------|
|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基盤造成 | | - | - 남북연합에 대비한 남북한 信賴造成 |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서울: 통일원, 1990);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서울: 통일원, 1990) 등 참조.



이와 같이 남북 교류·협력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자 통일의 중간과정으로서 「南北交流・協力期」는 물론 「南北聯合期」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역할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²⁾



「南北交流・協力期」에 사회・문화・경제분야 교류・협력의 기본목표는 비정치적 영역에서 쌍방간의 葛藤的 要素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民族 同質性을 회복하고 「사회・문화・경제공동체」

2) 統一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南北交流協力部門計劃 試案」(서울: 統一院, 1991), p. 19.

형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남북교류·협력기」는 남북한관계와 관련하여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³⁾ 첫번째 시기에 한국은 部分的·機能的인交流를 통해 북한사회의 開放化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반면, 북한은 국내외의 압력으로 인하여 교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북한은 對南交流의 일차적인 목적을 體制維持 및 強化에 둘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양측이 相互和解와 協力を 도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시기에는 북한의 開放으로 인하여 남북한 상호간 實體를 認定하는 바탕에서 남북한이 同質性 回復을 모색하고 民族統一을 지향할 것이며, 相互交流가 活性화될 것이다. 이 기간 중 한국의 교류목적은 當局間 對話를 통해 交流·協力を 制度化함과 동시에 북한의 왜곡된 의식구조와 정신문화 풍토 시정에 주력함으로써 남북한체제를 單一民族共同體 형성 방향으로 조정 또는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다.

「南北聯合期」에서 사회·문화·경제분야 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기」 동안 활성화된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남북한 합의하에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姜光植 編, 「南北 學術交流 與件診斷 및 對備策 摸索」(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pp. 192~193.

「南北연합기」는 남북한 관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 바, 「1단계 남북연합」에서 남북한은 經濟交流·協力 擴大, TV·신문·방송 공개를 통한 南北韓 社會開放 등 초보적인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한다.⁴⁾ 「2단계 남북연합」에서 남북한은 사회·문화·경제 등 제분야에서 統合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완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政治的 統合의 기초를 구축해 나간다.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 基盤造成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1단계 남북연합」까지 계속 추진된다 고 볼 수 있다.

2. 交流·協力의 基本方向

가. 方法論的인 시각에서의 考慮事項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실현방안 모색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통일된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理念指向性, 둘째, 현실여건에 비추어 본 實現可能性, 셋째, 波及效果 및 目標接近上의 效果 등이다.

우선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는 궁극적 목표인 「統一

4) 蘆泰愚 대통령은 1991년 9월 25일 뉴욕 기자회견에서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國家聯合 → 聯邦 → 統一」의 3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의 형태를 떨 수 있으며 「2단계 남북연합」은 「연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된 民族共同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단순히 국가간·민족간의 교류·협력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되며, 민족사회의 同質性 回復을 통한 單一民族共同體 형성이라는 理念的 指向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實現可能性의 문제이다. 동족상잔의 경험과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反目·不信,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비생산적 競爭意識 등 남북관계 증진의 障碍要因을 제거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된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관련하여 波及效果가 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 교류·협력사업이 중요한 기능을 갖는 이유는 이를 통해 남북간 相互信賴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교류·협력보다는 가능한 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이 모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이 남북한 사회개방을 촉진시켜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의 실태를 이해하고 남한사회의 비교우위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自由化와 開放化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교류·협력의 推進方向 및 戰略

(1) 교류·협력의 範圍

사회·문화·경제분야에 있어서 우선 경제분야는 交易, 經濟的 便宜施設의 공여, 資本 및 技術의 合作을 포함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범위는 경제분야에 비해 광범위한 동시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적십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離散家族 찾기운동은 형식상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접촉이라는 점에서 사회·문화교류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으나, 적십자회담에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바, 고차원적인 협상전략이 요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대체로 지금까지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간의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어온 것을 바탕으로 사회·문화교류 對象分野를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學術·科學：自然科學(생물학, 수학, 화학, 의약학, 천문기상학, 환경, 농학, 해양학, 지질학, 공학), 人文科學(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철학, 민속학)

文化·藝術：民俗 및 公演藝術(연극, 음악, 무용), 美術, 映畫, 純粹文學

言論·放送

觀光

體育

宗教

(2) 교류·협력의 優先順位

사회·문화·경제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교류·협력상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民族的 同質性을 공유하고 理念的 葛藤이나 對立이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는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實現可能性을 고려하여 쌍방이 공동의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간 水平的 協力이 가능한 분야나 북한이 우세하거나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부터 교류를 추진하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셋째, 波及效果가 비교적 큰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문화·경제 제분야 상호간 또는 정치분야의 남북관계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經濟分野에서는 남북한 경제 체제의 우열비교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제3국의 중개를 통한 間接交易을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社會·文化分野에서는 남북간의 이념대립 및 체제경쟁이라는 대치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정치·이념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고학·고대사·민속학·전통민속예술 등이 교류·협력의 일차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순위와 더불어 쌍방의 제의에 대체가능한 분야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교류·협력의 推進原則

첫째, 交流主體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교류의 축적을 통해 정부차원의 사회·문화·경제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民間交流優先의 원칙을 들 수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정부 당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民間交流·協力を 보장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有機的인 協力 및 機能分擔을 모색한다는 전제하에 지켜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협력의 接近方法으로는 漸進的·段階的 方法을택해야 한다. 무리하고 조급한 교류의 시도는 오히려 원활한 교류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단발적인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를 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협력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國土統一院, 「東西獨關係를 모델로 한 南北韓間 社會文化分野의 交流協力對策」(서울: 國土統一院, 1984), pp. 53~54.

(4) 段階的 交流·協力戰略

사회·문화·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段階的인 戰略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우선 가능한 부문에서부터 가능한 접근방법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교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接近形態에 따라 사회·문화·경제교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接近方法 및 參加國家에 따라 남북 쌍방이 직접 접촉하는 「直接形」과 제3국을 중개로 하거나 국제회의를 통해서 접촉하는 「間接形」 및 양자를 병행하는 「混合形」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接觸場所에 따라 「國際形」과 「國內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交流對象에 따른 구분으로는 「物的 交流」와 「人的 交流」가 있다.

남북 사회·문화·경제교류는 초기에는 「間接形·國際形·物的 交流」의 형태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直接形·國內形·人的 交流」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두 형태의 교류를 적절히 배합하여 추진하는 것도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 교류·협력의 内容이나 波及效果에 따라 經濟分野와 社會·文化分野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경제분야는 시혜적 측면을 고려한 援助性 交流·協力과 經濟性을 고려한 協力性 交流·協力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성을 고려한 교류·협력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水平的交流·協力과 남북한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에 의거한 垂直的交流·協力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류·협력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우선 「援助的一水平的」인 분야에서 시작하여 「援助的一垂直的」, 「經濟的一水平的」, 「經濟的一垂直的」인 분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는 본질적으로 理念性이 내포된 경우와 어느 정도 이념성이 배제된 경우로 구분하여 「理念的」分野와 「非理念的」分野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교류가 남북한 쌍방에 결과적으로 미치게 될 효과를 「競爭的」인 경우와 「非競爭的」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쟁적인 부문은 남북간의 직접 대립을 조장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교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상의 유형에 따르면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非理念的－非競爭的」, 「非理念的一競爭的」, 「理念的一非競爭的」, 「理念的一競爭的」 교류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를 우선 「비이념적－비경쟁적」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비이념적－경쟁적」 분야, 「이념적－비경쟁적」 분야 그리고 「이념적－경쟁적」 분야의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경제교류는 그 重點內容과 指向性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의 사회·문화·경제교류는 理念的 要素가 가급적 排除되어야 하며 상호보완·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북한의 교류·협력은 대남선전·선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인 바,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고히 수립한 이후 북한의 주장을 비방·배척하기보다는 수용을 통한 북한의 개방유도라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異質的 要素의 克服段階인 제 2 단계에서는 民族同質性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이념적 갈등, 적대의식이나 행동을 民族共同體 意識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교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統一指向性을 너무 강하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異質性 克服을 최대 목표로 삼아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 3 단계는 民族同質性의 回復·發展段階로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단계별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는 交流基盤 構築段階로서 자료와 정보교환, 제 3 국에서의 접촉·교류 등의 인적 교류, 간접교역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단계다.

제 2 단계는 共同協力 形成·推進段階로서 인적 교류의 확대, 공동조사·연구사업, 남북한 직교역, 제 3 국에서의 합작을 추

진할 수 있다.

제 3 단계는 交流·協力體制 確立段階로서 공동개발, 공동합작, 직접투자 등의 교류·협력 확대 및 정부차원의 협력을 통해 교류·협력체제가 구축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적 교류·협력 推進方案을 교류·협력의 目的과 南北韓關係를 연계시켜 도식화하면 〈表 1〉과 같다.

〈表 1〉 段階的 交流·協力 推進方案

| 區 分 | 推 進 方 案 | 交流·協力 目的 | 南北韓關係 |
|---------------------------------|--|-----------------|---------------|
| 제 1 段階: 교류기반 구축단계 | 經濟: 간접교역 社會·文化: 자료·정보 교환, 제 3 국에서의 접촉 | 상호보완·발전 도모 | 和解 및 協力 |
| 제 2 段階: 공동협력 형성·추진 단계 | 經濟: 직교역, 편의시 설 상호공여, 제3국 협작 社會·文化: 인적 교류 확대, 공동조사·연구 | 이질적 요소 극복 | 相互認定· 平和共存 |
| 제 3 段階: 교류·협력 체제 확립 단계 | 經濟: 공동개발·직접 투자 社會·文化: 공동합작, 정부차원의 협력 | 민족 동질성 회복·발전 | 南北聯合 |

(5) 추진시 留意事項

남북간 사회·문화·경제교류를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문화·경제개념에 대한 남북간의 基本認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문화·학술·과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정치적 용어들이 북한에서는 정치사회화와 연결되어 국민들에 대한 意識化 教育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경제교류가 理念鬪爭 및 宣傳의 媒體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북한이 사회·문화·경제교류를 한국의 반정부·반체제 인사들과의 교류로 유도함으로써 남조선 혁명전략에 이용할 가능성 및 남북교류가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호불신감을 조장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III. 「남북 사회·문화·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分野別 交流·協力方案

1. 經濟分野

가. 推進現況

(1)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南北韓의 提案

휴전 이후 1984년 南北經濟會談이 열리기 이전까지 남북간에는 여러 차례의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⁶⁾ 이 시기에 있어 남북간 제의의 특징은 196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데 반해, 1970년대 들어 오면서부터는 남한이 경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북한은 경제력의 상대적 우위에 기초하여 垂直的인 分業體系 확립, 援助 등을 제안하였으며, 물자교류보다는 地下資源의 共同開發과 共同漁撈 등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이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기초로 하여 物資交流와 經濟人交流, 商社의 交換 및 常駐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中國의 開放 등 국제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 1984년 「合營法」을 공포하였다. 한편 1984년 10월 12일 신병현 부총리는 對北書翰을 통해 南北經濟會談을

6) 大韓商工會議所, 「北韓經濟의 實狀, 南北韓 經濟交流의 可能性 및 對應方案」(서울: 大韓商工會議所, 1990), pp. 85~91 참조.

제의하였고, 1984년 10월 16일 북한의 김환 정무원 부총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같은 해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

제 1 차 경제회담(1984. 11. 15)에서 남북한은 교역품목·교역량·가격·거래방식·수량 등의 物資交流問題와 공동사업·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등 經濟協力에 관한 방안을 제의·협의하였다. 양측은 교역품목중의 일부와 거래방식·수송방법 그리고 天然資源의 공동개발 및 이용과 共同漁撈水域 설정 등에서 의견접근을 보였다.

제 2 차 경제회담(1985. 5. 17)에서 한국은 제 1 차 경제회담에서 양측이 제의한 교역품목중 쌍방간 의견이 일치된 품목에 대한 교역을 우선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南北經濟協助共同委員會」의 구성·운영을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 3 차 경제회담(1985. 6. 20)에서는 한국이 남북한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合意書 채택을 제안하였으나, 북한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力機構」 설치에만 합의하였다.

제 4 차 경제회담(1985. 9. 18)에서 쌍방은 경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법과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①合意書 명칭문제, ②事業推進原則 표기문제, ③交流對象品目, ④去來方式 및 決濟銀行, ⑤經濟協力對

象, ⑥共同委員會 구성, ⑦分科委員會 數, ⑧최고당국자로부터의 權限委任 명시문제, ⑨署名欄 표기문제 등 쌍방 합의서 초안 중 의견조정이 필요한 9개 항목에 대한 토의를 거친 후 합意書 文案調整을 위한 實務會議 개최에 합의하였다.

제 5 차 경제회담(1985. 11. 20)에서 남북한은 제 4 차 경제회담에서 합의된 9개 토의항목 중 3개 항목(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 원칙 표기문제, 교류대상품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86년 1월 22일 제 6 차 경제회담을 개최하기로 동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1986년 1월 20 일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연기하고 같은 해 4월 1일 경제회담을 거부한 아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⁷⁾

5차례에 걸친 남북경제회담에서 나타난 양측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면, 남한은 物資交流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協力事業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며, 북한은 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원자재는 원자재, 완제품은 완제품으로 교역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남한은 기능적·점진적·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은 경제교류·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접근방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하여 물자교류와 협작을 남북간의

7) 國土統一院, 「赤十字·經濟·國會·體育會談 關聯 雙方 主要發言 對比」(서울: 國土統一院, 1986), pp. 65~114 참조.

獨自의인 方式을 통해 동시에 실현할 것을 제의한 반면, 남한은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先交流·後合作 및 객관적인 국제거래방식을 제안하였다. 남북한이 경제회담에서 제의한 품목을 살펴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南北韓 交易品目 提議比較

| 南 韓 | 北 韓 |
|---|--|
| 購入品目 : 무연탄·철광석·선철·연괴·아연 괴·규사·고철 등 광산물, 명태· 누에고치·팥·옥수수·파마자 등 농수산물과 기타 한약재 | 購入品目 : 철강재·중석광·납사·섬유 등 공산품, 남해어족·소금·감귤 등 농수산물 |
| 販賣品目 : 철강, 동, 알미늄, 가정용 및 공 업용 재봉기·경운기·승용차·2륜 차 등 기계류, 시계, 칼라TV 수 상기·음향기기·전기·전자제품, 섬유사·섬유원료·섬유직물·담요 등 섬유류, 기타 고무벨트, 피아 노, 황산카리, 정제 글리세린 및 의약품 등 | 販賣品目 : 철광석, 석탄, 마그네샤크링카, 일반 공작기계·채취설비 등 공 업상품, 명태·쌀·강냉이 등 농 수산물 |

資料：國土統一院, 「赤十字·經濟·國會·體育會談 關聯 雙方 主要發言 對比」(서울: 國土統一院, 1986), pp. 86~91 참조.

교역품목에 관한 제의와 함께 토의된 남북간 교역을 위한輸送方式에 있어 남한은 구입측 船舶을 이용하고, 鐵道輸送이 가능하도록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은 철도에 있어서는 경의선을 연결하여 이용하고 海上輸送을 위하여 북한의 남포·원산, 남한의 인천·포항을 開放할 것을 제의하였다. 經濟協力 및 合作投資問題에 있어서 남한은 자연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공동어로수역 설정 추진 및 무연탄·철광석 등 자원개발을 제안하였으며, 북한은 상대측 광산과 철광을 이용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⁸⁾

한편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7일 남북간 交易의 門戶開放을 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간주하는 「대통령 特別宣言」을 발표하였다. 同年 10월 민간기업의 북한물자 교역과 남북 경제인의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南北物資交流指針」을 제정·시행하고, 남북한 경제인 상호방문 및 접촉절차 마련을 위한 「南北經濟人相互交流制度」를 제정·시행하였다. 1989년에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1990년 8월 1일을 기하여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南北協力基金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한내의 법적 준비를 확고히 하였다.

(2) 經濟交流·協力現況

해방 이후 1949년 4월까지 남북간에는 密貿易과 軍政貿易

8) 地下資源 共同開發 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우선 쌍방이 각각 자기의 노력, 설비로서 상대측 광산과 탄광을 이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경제협력에 대해 비현실적인 자세를 보였다. 앞의 글, p. 92.

의 형태로 물자교류가 이루어졌고 북한의 전력이 남한에 공급되었으나, 韓國戰爭 이후에는 일체의 경제교류가 중단되어 남북간의 경제교류나 협력은 단절된 상태였다.

그러나 1984년 9월 8일 「조선적십자회」가 남조선 수해이재민들에게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救護物資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왔으며, 9월 14일 대한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같은 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쌀 5만석, 천 50만 m²,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의 구호물자에 대한 인도·인수가 판문점, 인천항 및 북평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⁹⁾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1988년 「7. 7 선언」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힘입어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現況은 〈表 3〉과 같다.

〈表 3〉 對北韓 搬出入 承認現況

(단위: 件, 千달러)

| | | 1988 | 1989 | 1990 | 1991.11 | 합 계 |
|----|----|-------|--------|--------|---------|---------|
| 搬入 | 건수 | 4 | 57 | 75 | 300 | 436 |
| | 금액 | 1,037 | 22,235 | 20,354 | 152,903 | 196,529 |
| 搬出 | 건수 | — | 1 | 4 | 27 | 32 |
| | 금액 | — | 69 | 4,731 | 18,694 | 23,494 |
| 合計 | 건수 | 4 | 58 | 79 | 327 | 468 |
| | 금액 | 1,037 | 22,304 | 25,085 | 171,597 | 220,023 |

資料: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5호 (1991), p. 12.

9) 大韓商工會議所, 「北韓經濟의 實狀, 南北韓 經濟交流의 可能性 및 對應方案」, p. 82.

지난 3년간의 남북간 間接交易 推移를 보면,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반출보다 월등히 많으며, 둘째, 북한으로부터의 搬入品目은 아연괴, 열연코일 등 비철금속 및 그 제품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냉동명태, 냉동조기 등 동물성 생산품과 한약재, 감자 등 식물성 생산품을 들 수 있다.¹⁰⁾ 또한 반입의 80%가 8개 綜合商社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989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의 참여도 활발해져 참여업체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¹¹⁾ 이러한 추세에서 보면 남한의 主導에 의하여 남북간 間接交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교역물량은 양측의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라 하겠다. 또한 간접교역은 중간상인을 거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상인들이 남북간의 특수관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直交流를 통한 남북간 교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남북간 교역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북한의 심각한 外貨不足으로 인한 대북한 반출 제약, 북한 產業水準의 낙후로 인한 반입품목의 제약,

10) 1988년 이후 1991년 상반기까지 총반입 승인액 1억 1천 7백만달러 중 비금속 및 그 제품이 43.9%, 동물성 생산품이 16.8%, 식물성 생산품이 13.0%, 귀금속이 6.7%, 광물성 생산품이 11.9%, 기타 7.7%로서 금속류 및 광물성 생산품이 반입 승인액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 협력 동향」, 제1호 (1991), p. 8.

11) 1990년 7월 현재 참여업체수는 36個社이다.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 83.

북한의 貿易慣行에 있어서의 후진성으로 인한 契約履行 與否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경제의 문제점을 감안한 남북간 交易擴大 對策이 필요하다.

나. 推進方向

(1) 北韓 經濟開放의 方向

북한은 지난 40여년간 생산수단의 국유화,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및 계획·지령에 의존하는 中央集權的 命令經濟體制 하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自立的 民族經濟 건설을 추구하여 왔다. 북한은 이러한 발전전략하에 대내적으로는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경제 건설에 있어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자원을 도입하기 위한 補助手段으로 貿易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對內指向的이고 閉鎖的인 經濟構造와 重工業 위주의 工業化戰略은 非效率的 資源利用과 북한경제의 技術的 落後를 초래하였으며 상품의 競爭力を 저하시켜 장기적인 經濟沈滯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경제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970년대초부터 外國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하여 對西方貿易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나 북한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貿易赤字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누적된 무역적자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상환 불능상태로까지 악화되어 서방국가들은 북한과의 무역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서방 무역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 더욱 악화되는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채상환의 부담이 없는 外國企業과의 合作을 모색하기 위하여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였고, 〈表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속적인 외채의 누증으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開放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表 4〉 北韓의 外債現況

(단위: 億달러)

| | 1980년 | 1986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
| 西方圈 | 22.2 | 22.3 | 28.0 | 27.3 | 27.4 | — |
| 共產圈 | 12.4 | 18.3 | 19.8 | 24.7 | 40.4 | — |
| 合 計 | 34.6 | 40.6 | 47.8 | 52.0 | 67.8 | 78.6 |

資料: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p. 41.

1990년 말까지 누적된 북한의 외채는 78억 6천만달러로서 북한의 1990년도 수출액이 20억 2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¹²⁾ 기존의 경제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經濟開放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개방의 程度와 速度를 예측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경제개방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요인과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12) 북한의 1990년도 무역액(수입+수출)은 46억 4천만달러로서 1990년 한해에 만 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 등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서울: 統一院, 1991), pp. 20~21.

요인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¹³⁾

북한의 경제개방에 順機能的으로 작용할 要因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正統性 확보를 위하여 住民生活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對內的 要因과 中·蘇의 對北韓開放壓力과 국제적 孤立現狀 타파 필요성 등과 같은 對外的 要因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경제의 非效率性으로 인한 만성적 침체,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마비현상 등 國內經濟的 要因과 소련 및 동유럽권의 개혁으로 비롯된 사회주의권내 求償貿易 감소로 인한 外貨不足의 심각성, 중국의 지속적 對外開放政策 추진과 가시적 효과 등 國際經濟的 要因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개방에 逆機能的으로 작용할 要因으로는 개방으로 야기될 수 있는 體制顛覆 可能性에 대한 불안, 40여 년간 지속된 政治優先原則 그리고 主體思想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인 價格體系의 경직성과 自立的 民族經濟論의 고수, 개방을 위한 内部改革의 미비 등 國內的 要因이 북한의 경제개방에 장애가 될 것이다. 국제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社會主義 分業體系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동유럽국가들 보다는 소련경제권 몰락의 영향을 적

13) 李東輝, 「北韓의 開放 可能性: 對外 經濟關係를 中心으로」(서울: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1991); 제일경제연구소, 「南北韓 經濟協力과 企業의 對應戰略」(서울: 제일경제연구소, 1991), pp. 86~103 참조.

게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수출주종 품은 비철금속인 바, 國際原資材 價格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하여¹⁴⁾ 북한의 輸出收入이 감소됨에 따라 북한은 외화를 추가 획득하기 위하여 開放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開放을 통한 세계경제에의 편입노력이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집권층내 閉鎖經濟支持論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개방에 미칠 요인을 감안하면 북한은 政治改革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면서 制限된 범위내에서 經濟改革과 開放을 추구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中國式 改革·開放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무역과 차관도입을 추구하였던 1970년대의 1차 경제개방정책과 1980년대의 합작투자유치를 특징으로 하는 2차 경제개방정책에 이어 1990년대에는 북한내에 經濟特區 설치 등과 같은 3차 경제개방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2) 南北韓 經濟의 比較

분단 당시 남한지역은 주로 농경지대로서 農業과 輕工業을 위주로 하는 產業構造를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지역에는 풍부한 地下資源과 水資源을 바탕으로 금속·화학·전력공업 등 重工業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한은 1962년부터 6차에 걸

14) 최근 비철금속을 포함한 국제원자재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소련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제조업분야의 원자재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李東輝, 「北韓의 開放 可能性」, pp. 67~68.

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결과 1990년말 현재 서비스 산업 46%, 농림·어업 9%, 건설업을 포함한 광공업부문 45%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농림·어업부문 27%, 광공업부문 56%, 서비스부문 17%로 産業構造上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⁵⁾

남북한의 貿易構造를 보면 남한의 무역의존도는 60%를 상회하는 반면 북한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무역수지면에서는 남북한 공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적자는 북한의 무역규모와 1990년도의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 무역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남한의 무역은 총교역액의 55% 정도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며 북한의 무역은 소련과의 교역이 55%, 중국과의 교역이 15%, 일본과의 교역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 무역구조의 地域偏重現象과 관련, 남한은 北方政策과 輸出多邊化政策의 실시로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북한은 계속되는 經濟沈滯로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위와 같은 남북한 산업 및 무역구조의 상이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5)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p. 4.

(3)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의 方向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및 통합은 일반적으로 「交易段階 → 資本·技術 協力段階 → 經濟統合段階」의 3단계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¹⁶⁾ 위와 같은 북한의 경제개방 방향에 비추어 볼 때, 1990년대 전반기에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바람직한 발전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제3국을 통한 중개무역이나 해외교포를 이용한 間接交易段階, 둘째, 당사자간의 直交易段階, 셋째, 통신 및 교통 등 經濟的 便宜施設의 상호공여를 통한 直交易의 深化와 經濟協力段階의 시작, 넷째, 제3국에의 합작투자 진출을 통한 양측의 協力經驗 축적, 다섯째, 地下資源 또는 觀光資源 등의 共同開發을 통한 合作事業의 심화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자본 및 기술의 本格的인 合作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과정에서는 선행단계의 경험이 다음 단계의 목표추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初期段階에서의 援助性 경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 水平的交流를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經濟性에 바탕을 둔 垂直的 分業의 형태로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간접교역단계에서는 經濟性을 고려한 교류보다는 북

16) 延河清, 「北韓의 經濟開放과 南北韓 經濟協力」(서울: 大統領 諮問 21世紀委員會, 1991).

한이 당면한 經濟難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민족적 견지에서 援助性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開放에 대한 敏感性을 고려하여 水平的 商品交易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交流의 活性化를 목표로 하되 수량과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과의 접촉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북한이 國際貿易慣行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여 다음 단계인 직교역단계에 대비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간접교역 활성화로 직교역 필요성이 증대되면, 經濟性을 고려하여 남북간 상품의 比較優位에 입각한 直交易活性化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는 經濟的 便宜施設의 相互供與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경제적 편의시설이란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로서, 거래에 따르는 支拂問題, 교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輸送·通信手段의 상호이용, 기업인들의 상호방문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 支援施設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제적 편의시설의 상호공여는 제2단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원칙이지만 북한의 개방에 대한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제2단계인 직교역 활성화와 병행 또는 셋째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閉鎖的인 體制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 할 것이고, 반면에 남한 기업들은 북한체제가 폐쇄된 상태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직교역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된 이해관

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간 直交易 活性化에 대한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남북간 직교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남한 물자가 북한사회로 반출되어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극대화될 것이므로, 이 기간에는 북한의 교역상대로서 남한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⁷⁾

넷째, 남북간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서 추진될 제3국에 대한 남북간 합작투자는 본격적인 합작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축적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은 국제적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분야를 선정,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그 果實을 남북한이 共有함으로서 민족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북한은 資本不足, 남한은 人力不足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한의 資本, 經營技術 및 機械設備와 북한의 勞動力を 이용한 제3국에서의 합작투자를 상정할 수 있다.

다섯째 단계는 資源의 共同開發段階로서 앞 단계에서의 합작경험을 토대로 남북한이 상대측 지역의 자원을 공동개발,

17)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한의 경제발전단계와 비슷한 수준을 지닌 대만·홍콩·싱가포르 등이 북한의 交易相對國으로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전략적인 사고에 의하여 북한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이들 국가와 북한과의 경제관계 진전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인 본격적인 합작에 대비하여야겠다. 공동개발의 대상으로는 地下資源, 觀光資源, 魚族資源 등을 들 수 있는 바, 남북한의 資源分布를 감안할 때 잠재력이 많은 분야라 하겠다. 자원의 공동개발단계에서는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 남북한의 產業構造를 면밀히 분석, 相互依存度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資本 및 技術의 合作段階는 제4단계와 제5단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적인 자본·기술합작을 활성화시켜 본격적으로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단계로서, 향후 남북간 經濟統合과 民族經濟共同體 구성을 위한 기반의 완성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 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를 가정한 產業構造調整과 양측 經濟政策 統合 등을 상정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단계적 원칙하에 남북 經濟交流·協力を 추진되어 남북한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과거 3년간 이루어진 남북간 經濟交流의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감안하여 多段階的同時推進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시 예상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貿易에 관한 制度上 問題點과 관련하여 북한이 1984년에 발표한 「合營法」을 분석하여 보면, 시행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¹⁸⁾ ① 外國人과의 合作投資

18) 한국수출입은행,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p. 67~68.

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細部內容에 있어서 具體性을 결여하고 있다. ② 會社의 存續期間 및 延長期間, 登錄資本金의 최소·최대금액 및 出資比率의 上·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자본금이 납입된 자금인지 또는 계약상의 금액인지 불분명하다. ③ 會社의 社長, 副社長의 選任方法, 이사회 소집에 대한 議事定足數 및 의사결정 시 表決方法이 불분명하고, 규정상 전원합의제이므로 意思決定이 경직화되어 있다. ④ 합영회사에 대한 국내외 外貨貸出은 허용하고 있으나 대출기간, 대출한도 및 대출절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⑤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 이외의 出資對象에 대한 客觀的 評價基準 및 土地使用料 등에 대한 구체적 결정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시행상의 문제점과 함께 「합영법」은 主體思想 및 自力更生原則과의 상충, 당의 통제에 따른 投資 및 經營上의 限界, 對外信用度 빈약 및 投資危險 부담, 에너지·원자재 등의 供給能力 미약, 社會間接資本 취약 및 對內市長의 협소 등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問題點으로 일부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을 제외하고는 그 실적이 저조하였다.

둘째, 북한 경제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교역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화폐의 태환성과 환율문제로서 북한은 국제무역상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複數換率制를 사용하고 있어서 남북간 물자교역시 혼돈이 예상된다. ② 북한의 對外貿易窗口는 대외적으로는 民間企

業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黨과 政府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역의 형태, 종류 및 가격 등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③ 북한의 商品價格體系가 자본주의 가격체계와 다르므로 우리 상품의 수출시 북한에서 어떠한 가격으로 책정될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비교우위가 경제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3년간의 南北 經濟交流經驗에 비추어 볼 때 북한측으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物品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外貨不足事態로 인하여 우리측 반출물품에 대한 결제능력이 우려되고 있다.

넷째,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남북한간에는 현재 投資保障協定 등 무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비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업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經濟的 交流·協力を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되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또는 동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각 단계별 교류·협력방안은 前述한 교류·협력방향 및 원칙

에 입각하여 경제분야의 교류·협력 대상분야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民族經濟共同體」 형성을 위한 信賴構築과 基盤形成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경제교류·협력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가) 제 1 단계：間接交易

제 1 단계에서는 「7. 7 선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북한과의 간접교역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交易活性化 方案을 추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援助性 物品을 제공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필품 및 의약품 제공을 위주로 한다. 또한 원조성 물품 반출 시 직교역단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초기에는 海路를 이용하되 直航路를 개통시키고 점진적으로 陸路를 통한 輸送을 확대시킨다. 아울러 초기에는 북한의 경계심을 감안하여 原產地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neutral packing)을 택할 수 있지만 점차로 한국상표 부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조성 물품 제공은 한국상품의 잠재적 시장개발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仲介貿易을 활성화시킨다. 중개 무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일본 등에 거주하는

海外僑胞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계 교포들과 합작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商圈을 이용하면 북한에 남한 물자를 수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三者間 貿易을 추진한다. 즉 남한은 중국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필품을 생산하여 북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중국에 수출한 플랜트 대금으로 북한으로부터 광산물을 제공받는迂廻的인 貿易의 형태이다.¹⁹⁾ 이 접근방법은 북한의 개방에 대한 민감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동시에 韓·中間相互依存 심화 및 북한을 포함한 東北亞經濟圈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제 2 단계：直交易

초기의 직교역은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求償貿易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先行條件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물자교역에 대한 支拂保證問題이다. 남북간 직교역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남북한 중앙은행 또는 무역은행 사이에 清算計定을 설치,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의 외화부족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19) 李東輝, 「北韓의開放可能性」, p. 74.

경우에는 東西獨間 貿易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인 스윙信用供與制度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은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紛爭의 調整을 위하여 「南北韓 經濟交流仲裁委員會」의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北韓經濟의 實狀을 각 기업체들에 홍보하고 북한과의 貿易相談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 남북간 직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表 5〉 北韓의 圈域別 貿易構成比

(단위: %)

| 年度 | 開發途上國 | 西方先進國家 | | 社會主義國家 | | | 合計 |
|------|-------|--------|------|----------|------|------|-------|
| | | 西歐·其他 | 日本 | 東歐·쿠바·蒙古 | 中國 | 蘇聯 | |
| 1970 | 2.4 | 11.5 | 7.1 | 17.0 | 14.4 | 47.6 | 100.0 |
| 1975 | 10.0 | 18.1 | 12.5 | 12.8 | 23.7 | 22.9 | 100.0 |
| 1980 | 16.9 | 11.4 | 16.9 | 9.0 | 20.0 | 25.8 | 100.0 |
| 1985 | 9.5 | 5.7 | 14.9 | 10.7 | 16.6 | 42.6 | 100.0 |
| 1986 | 9.0 | 6.1 | 10.3 | 8.2 | 15.4 | 51.0 | 100.0 |
| 1987 | 10.0 | 9.1 | 10.8 | 8.9 | 12.4 | 48.8 | 100.0 |
| 1988 | 15.5 | 5.5 | 10.6 | 7.0 | 11.1 | 50.3 | 100.0 |
| 1989 | 15.6 | 4.7 | 10.4 | 7.7 | 11.7 | 49.9 | 100.0 |

資料：姜正模，「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서울：對外經濟政策研究院，1991），p. 28.

북한의 必要性에 중점을 두어 교역품목을 선정하고, 후기에는 남북한 경제의 比較優位에 근거하여 교역을 진행시킨다.

북한의 필요성에 근거한 직교역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貿易構造를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表 6> 北韓의 日本·蘇聯·中國과의 5대 交易品目

| 區 分 | | 5 大 交 易 品 目 |
|------------|-----|---|
| 對日本 交 易 | 輸 出 | ① 금(괴·편·입) ② 아연괴 ③ 철강코일 ④ 계(활어·냉동) ⑤ 무연탄 |
| | 輸 入 | ① 금(1차·제품) ② 승용차 ③ 스텐레스강제품 ④ 공작기계류 ⑤ 화물자동차 |
| 對蘇聯 交 易 | 輸 出 | ① 의류 ② 압연강재 ③ 마그네샤크링카 ④ 기강 및 설비 ⑤ 축전지 |
| | 輸 入 | ① 석유 및 석유제품 ② 기계 및 운송장비 ③ 고 체연료 ④ 면화 ⑤ 선철·강·압연품 및 생산공장 설비 |
| 對中國 交 易 | 輸 出 | ① 무연탄 ② 철 및 강 ③ 어폐류 및 그 조제품 ④ 금속성 광석 ⑤ 비금속성 광물제품 |
| | 輸 入 | ① 역청탄 및 코크스 ② 석유 및 석유제품 ③ 원 동기기 및 설비 ④ 곡식 및 가공품 ⑤ 채유용 곡 물 |

資料：통일원, 「남북경제교류 실무편람」(서울：통일원, 1991), p.
130.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주요 交易對象國은 소련·중국·일본으로서 1986~1989년 사이 北韓貿易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表 6〉은 북한의 對日·蘇·中 5대 교역 품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은 重工業製品, 蘇聯으로부터의 수입은 石油 및 工場設備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中國으로부터의 수입은 에너지 資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는 달리 穀物을 포함한 食用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은 中·蘇로부터 友好價格 폐지 및 硬貨決濟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物資難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간 직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의 對中·蘇 輸入物資를 남한 물자가 代替하는 방향으로 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품목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日·蘇·中과의 주요 교역품목 중 거의 모든 품목이라 할 수 있다.²⁰⁾

한편 본격적인 직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比較優位에 바탕을 둔 품목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남북간 貿易構造와 남북경제회담에서 양측이 제의한 품목을 고려하여 經濟性에 근거한 남북간 直交易 有望品目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²¹⁾

20)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25~50 참조.

21) 제일경제연구소, 「南北韓 經濟協力과 企業의 對應戰略」, pp. 108~111;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p. 86.

搬出有望品目으로는 섬유직물, 의류, 전기·전자제품, 산업용 기기, 자동차, 의약품 등이며 搬入有望品目으로는 유연탄, 망간,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등 광산물과 중간재로 미정제 연괴, 마그네슘괴, 알루미늄괴, 페로실리콘, 그 이외에 연괴, 니켈괴 등의 순으로 유력하며, 전기동, 재압연용 코일, 고철, 선철, 철근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農水產物 반입유망품목으로는 옥수수, 생사, 모피, 원피 등이 유력하고 참깨, 명태도 가능하다.²²⁾

이와 같은 對北韓 搬出入有望品目도 북한의 외화부족과 북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면 經濟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성에 전적으로 의존한 남북한 간의 交易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勞動力과 남한의 資本 및 技術을 결합하되 제품재구매거래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남한에서는 현재 賃金上昇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들의 생산공장이 동남아를 비롯한 저개발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북한에 외화결제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제품재구매거래방식의 교역을 적극 추진

22) 통일원, 「남북경제교류 실무편람」(서울: 통일원, 1991), p. 131.

23)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經濟交流 促進을 위한 中長期 發展計劃(案)」(서울: 韓國貿易協會, 1989), pp. 138~156 참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의 계약 불이행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간 직교역에 있어서 북한의 搬入品目에 대하여는 國際價格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하여 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남북간 직교역 활성화를 위한 動機賦與方式으로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 준다는 측면과 직교역을 활성화한다는 二重的 效果가 있다. 반면 남한 물품을 북한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不公正 貿易去來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직교역단계에서 정부는 南北協力基金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對北韓輸出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여 줄 수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⁴⁾ 즉 주요 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농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한국은 식량생산기반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剩餘農產物을 북한에 반출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은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남북

24) 李東輝, 「北韓의 開放 可能性」, pp. 75~76.

협력기금의 일부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한국의 經濟發展果實을 북한과 共有한다는 상징적 의미 및 우리의 資本市場開放에 대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제3단계：經濟的 便宜施設의 相互供與

前述한 바와 같이 경제적 편의시설의 상호공여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제2단계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北韓體制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제2단계와 병행하여 또는 그 이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편의시설의 상호공여에는 남북간 交通網·通信網 연결사업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편의시설을 남북한 교차지점에 설치하여 경제교류를 지원한다.

첫째,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안에 남북한 商品常設展示場을 설치한다. 둘째, 판문점에 양측 물품통과를 관장하는 物品交易所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판문점에 남한과 북한의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貨幣交換所를 설치·운영한다.

본격적인 남북간 교통망·통신망 연결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간 交通網 연결 초기에는 인천·부산·동해·목포항과 해주·남포·원산·나진항간의 海路를 이용하되 점차 陸路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남

북한 경제인 및 주민의 접촉기회를 가능한 한 확대시킨다.

鐵道의 복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경원선, 경의선, 금강산선 등 3개 철도망의 연결을 위한 설계 및 용지매입을 1992년내에 완료, 곧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경원선은 신탄리~월정, 금강산선은 철원~금곡, 경의선은 문산~장단사이의 용지매입을 먼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道路의 경우 국도 1호선(개성~문산), 3호선(신탄리~초산), 7호선(간성~고성)을 연결하는 案이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은 궁극적으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道路와 鐵道를 개통해야 할 것이며, 김포공항과 평양의 순안공항을 연결하는 航空路도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通信網의 정비는 궁극적으로 서울~평양간 전신·전화를 개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 통신망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기에는 판문점에 전화통화소를 설치하여 남북간 전화를 간접적으로 상호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 상업용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段階的 接近方案이 적절하다.

셋째, 이러한 통신과 수송에 관련된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하기 위하여 남한은 북한에 技術 및 資本을 제공하고 북한은 勞動力を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表 7>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전기·통신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남한이 일본을 대체하여 북한의 通信施設을 현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表 7〉 北韓의 對日本 電氣通信製品 輸入統計 (1988년)

(단위: 千엔)

| 品 目 | 金 額 |
|-------------------------|--------|
| 전화용·전시용 교환기 | 2,088 |
| 인터넷(전화용) | 3,491 |
| 전화용기기(인터넷, 간이교환전화장치 제외) | 2,352 |
| 팩시밀리 | 8,055 |
| 전신용기기(FAX 제외) | 783 |
| 유선전화, 전신용전기기기 부품 | 3,222 |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기기 | 7,105 |
| 동축케이블, 기타 동축전기도체 | 8,672 |
| 통신용케이블 | |
| - 사용전압 80V 이하 | 3,335 |
| - 사용전압 80V~1KV 이하 | 4,520 |
| 광케이블 | 5,641 |
| 원격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기 | 3,439 |
| 合 計 | 52,703 |

資料: 「日朝貿易」(1989年 6月); 이형교, “남북한 전기통신의 교류,” 「情報時代」(1990. 10)에서 재인용.

(라) 제 4 단계: 第3國에의 合作投資

남북한이 제 3국에서 공동으로 합작사업을 하는 단계로서, 북한의 對外關係 및 經濟發展狀態를 고려할 때 初期에는 저개발국, 後期에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북한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바, 초기의 저개발국에 대한 남북한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제3세계 지원현況을 살펴보면 〈表 8〉과 같다.

〈表 8〉 北韓의 第3世界 支援現況 (1980~1989년)

(단위: 萬달러)

| 地 域 | 國家數 | 無償支援 | 有償支援 | 合 計 |
|-------|-----|-------|--------|--------|
| 아프리카 | 33 | 6,042 | 13,401 | 19,443 |
| 중 동 | 8 | 2,807 | — | 2,807 |
| 아 시 아 | 8 | 51 | 207 | 258 |
| 기 타 | 5 | 883 | 3,000 | 3,883 |
| 合 計 | 54 | 9,783 | 16,608 | 26,391 |

資料：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p. 59.

북한의 제3세계 지원은 아프리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초기의 남북한 合作投資의 對象地域으로 남북한이 공히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을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남북한 합작사업은 다음과 같은 多重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의 經濟發展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한이 합작 진출할 수 있다. 둘째, 유엔에서 표밭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하여 유엔에서 남북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 셋째, 적은 비용으로 남북한 合作經驗을 축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社會

主義圈 국가들 중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 인도지나반도 국가들에 대한 남북한 합작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합작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남북한이 합작으로 다른 지역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시베리아지역 森林開發이나 가스 開發事業 등에 북한 労動力を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마) 제5단계：資源의 共同開發

제3국에의 합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은 資源의 共同開發을 추진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南北經濟會談에서 쌍방이 각자의 노력과 설비로 상대측 鐵山과 炭礦을 이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즉 북한에서는 철광산과 탄광을, 남한에서는 중석광산과 몰리브덴금속광산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은 漁業分野의 합작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하여 남북한 어민들의 자유어로 활동을 제안한 바 있어 이 분야에서의 남북간 합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자의 노력과 설비로 상대측의 자원개발을 추진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북한의 낙후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남북간 경제의 比較優位에 근거하여 합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간 공동개발사업은 地下資源, 魚族資源, 觀光資源, 農業資源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첫째, 地下資源의 개발은 黃海 大陸棚 공동시추를 시발로 하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한다.

둘째, 魚族資源의 공동개발은 南北 共同漁撈水域 設定에 관한 協定을 남북간에 체결하여 공동어로수역의 安全操業과 漁業爭議 예방처리문제를 해결한 후, 초기단계에는 군사분계선 부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여 공동어로작업을 추진하고, 점차 동해안 및 서해안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觀光資源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國際的인 觀光團地의 개발과 비무장지대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을 마련한 후 남한의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여 국제관광객을 유치한다.

넷째, 農業分野에서는 남한의 서해안 干拓地를 공동개발하고 군사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灌溉網을 연결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바) 제 6 단계: 資本 및 技術合作

이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에서 추진된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자본 및 기술협작을 추진한다.

첫째, 자본의 협작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경제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對北韓 借款提供을 고려한다.

둘째, 남북한 合作銀行을 설립하여 經濟統合에 대비하고 북

한화폐의 兑換性을 점진적으로 제고시킨다.

셋째, 기술협작과 관련하여 남한이 북한보다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對北韓 技術移轉을 통해 북한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國際經濟機構에 남북한이 單一議席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남북간 자본 및 기술협작을 추진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남북간 협작사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과의 협작유망분야 선정을 위하여 북한과 조총련의 협작사업사례와 유엔工業開發機構(UNIDO)에 제출한 해외 투자유치희망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²⁵⁾

〈表 9〉 北韓의 海外投資誘致希望 프로젝트

(단위: 件, 百萬달러)

| 部 門 | 投 資 對 象 | 投 資 規 模 | | 프로젝트數 |
|--------------|--|---------|-------|-------|
| | | 總投資 | 海外投資 | |
| 1. 광 업 | 동·흑연·대리석·화강암 등 | 67.1 | 46.3 | 5 |
| 2. 식품 및 농수산업 | 건강식품·수산물가공·콩기름·과일·쥬스 등 | 32.9 | 17.1 | |
| 3. 직물 및 의류 | 견직물·실크니트웨어·견양말·면신발·의류·나일론·스프·테트론섬유·인조견사 등 합성섬유 | 293.9 | 217.2 | 7 |
| 4. 목재 및 목재가공 | 합판 | 3.0 | 2.5 | 1 |

25) 延河清, 「北韓의 經濟開放과 南北韓 經濟協力」, pp. 27~30 참조.

| 部 門 | 投 資 對 象 | 投 資 規 模 | | 프로젝트數 |
|-----------------|---|---------|-------|-------|
| | | 總投資 | 海外投資 | |
| 5. 화학제품 | 페라이트·항수·정유·구연 산·염화비닐·스티렌·에틸 벤젠·가성소다·알데히드수 지·무수프탈산 등 | 276.6 | 139.9 | 11 |
| 6. 유리 및 요업품 | 고령토·규조토·점토·편암 토·벤토나이트·유리받침· 유리섬유·크리스탈 등 | 55.6 | 30.4 | 7 |
| 7. 금속산업 | 아연·카드뮴·티타늄·크롬 강·마그네사클링카·전기동 ·회토류·마그네슘 등 | 156.2 | 97.4 | 12 |
| 8. 조립금속품 | 볼트·넛트 | 0.8 | 0.3 | 1 |
| 9. 기계공업 | 공작기계·유압기·연삭기· 절삭기·산업용재봉틀·전해 장치·유압펌프 및 밸브·연 료펌프 및 분사기 등 | 192.1 | 95.2 | 8 |
| 10. 전기· 전자공업 | 밧데리·흑백TV·전기기구 ·전기모터·컬러TV·회토류 영구자석·계전기·변압기· 엘리베이터·소형컴퓨터·계 산기·녹음기·냉장고·양극 성 직접회로, | 334.2 | 165.1 | 25 |
| 11. 조 선 | 어선건조 및 각종 선박수 리 | 148.9 | 75.6 | 2 |
| 計 | | 1,561.3 | 887.0 | 82 |

資料：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vestment Promotion Service, *List of Project Profi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0*; 延
 河清, 「北韓의 經濟開放과 南北韓 經濟協力」(서울: 大統領
 諮問 21世紀委員會, 1991), p. 30에서 재인용.

북한의 합작투자유치 희망산업 대부분은 남한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규모가 소액이므로 북한과의 합작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직물 및 의류, 식품 및 농수산가공업, 전기·전자부문, 화학·조선분야 등에 대하여 북한에 합작투자를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유엔開發計劃(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유역 개발 계획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단계적 남북간 교류·협력방안을 도표로 요약하면 〈表 10〉과 같다.

〈表 10〉 經濟交流·協力方案

| 段階 | 方 案 |
|------|--|
| 第1段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間接交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및 의약품 위주의 원조성 물품 제공 - 해외교포를 이용한 중개무역 -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삼각무역 |
| 第2段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直交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무역 - 제품재구매거래방식 이용 - 남북협력기금 적극 활용 - 청산계정 이용 - 남북한 경제교류중재위원회 설치 |
| 第3段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的 便宜施設의 相互供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상품상설전시장, 물품교역소, 화폐교환소 설치 - 남북간 교통망 연결 - 남북간 통신망 연결 |

| 段階 | 方 案 |
|------|--|
| 第4段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3國에의 合作投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지역 국가, 인도지나반도 국가에의 합작 투자 - 시베리아지역 개발에의 합작투자 |
| 第5段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源의 共同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자원, 어족자원의 공동개발 -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 서해안지역의 관개망 연결 공동추진 |
| 第6段階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本 및 技術合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한 차관공여 - 남북한 합작은행 설립 - 국제경제기구에 단일의석 가입 |

(2) 경제교류·협력 추진시 考慮事項

위와 같은 經濟交流·協力方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南北韓 經濟共同體를 형성한다는 궁극적 목표 와의 연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多段階 同時推進도 적극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남북한간 經濟交流·協力を活性化하기 위해 서는 원칙에 의거한 단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南北韓의 利害가 合致되는 분야들을 소규모의 형태로라도 우선 추진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狀況變化에 伸縮的으로 對應하기 위하여,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柔軟한 姿勢를 堅持하고 우리의 一方的 措置가 가능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多段階的 接近도 考慮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은 南北經濟會談(1984. 11~1985. 11)에서 去來 方式 및 決濟問題, 交流對象品目 등 物資交流에 대한 문제와 地下資源 共同開發, 南北 共同漁撈水域 設定 등 協力對象分野에 대하여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경제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外貨收入의 增大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1986년 「국가관광총국」 설치, 1987년 世界觀光機構 가입 및 1989년 재미교포와의 「금강산 국제관광회사」 합작설립 등 대외 관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대성은행간에 금강산지역 관광자원 공동개발에 합의한 예가 있으므로 觀光分野에서의 협력은 남북한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라 하겠다. 따라서 초기에는 우리의 마케팅 채널을 통하여 북한의 海外 觀光客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을 벌이는 한편 점진적으로 남북한을 방문하는 觀光客의 相互直接往來를 허용하여 남북한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이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후기에는 북한의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북한의 여행업, 호텔업 등 관광사업에 합작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東海와 西海에는 어종의 계절에 따른 회유로 어장이 남북에 걸쳐 형성되나 군사분계선으로 어장이 분단되어 남북 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불편이 많고 이에 따른 民族的 經濟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에너지 不足과 船舶의 노후로 인하여 魚族資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동어로는 海上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타분야에 비해 양측 주민의 직접적 접촉이 제한될 것이며, 북한의 開放에 대한 민감성 문제가 적게 부각될 분야이므로 남북한이 協力事業을 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南北韓이 共同漁撈水域을 설정, 각자의 어선과 장비로 漁撈作業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남한의 어선, 장비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合作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현재 賃金의 급격한 上昇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북한은 外貨不足으로 인하여 물자교류에 따르는 결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經濟難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搬出할 物品도 지극히 制限되어 있다. 이러한 양측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발, 섬유 등 勞動集約的 產業部門에서 제품재구매거래방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유엔開發計劃을 통하여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구상은 1970년대 對外貿易 擴大努力과 1980년대 外國과의 合作努力에 이은 세번

째 經濟開放努力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冷戰的 國際秩序와 南北關係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1, 2차 경제개방노력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脫冷戰의 國際環境과 南北關係改善은 한국이 북한의 3차 경제개방노력에 能動的으로 參與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발전과정에서 얻은 開發經驗과 技術을 최대한 活用하여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을 主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이 선봉지구 경제특구 설치시 초기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2. 學術·科學分野

가. 推進現況

한국 정부와 학계는 그간 남북간 異質化 극복 및 統一을 지향한 교류확대 차원에서 남북간 학술·과학교류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다만 최근 국제기관이나 해외동포들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의 공동참가 형태로 남북한 학자간의 接觸과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자들의 상호왕래 및 학자들간의 연구주제에 대한 합의 등과 같은 本格的인 學術交流는 전무한 상태이다.²⁶⁾

26)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호 (1991), p. 12.

학술·과학분야에서의 南北韓 人的 交流現況을 보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1991년 9월 30일까지 144건의 교류신청이 접수되어 134건이 승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34건이 성사되었다. 1990년에는 14건의 남북한 학자 및 과학자간의 접촉·교류가 있었으며, 1991년에는 9월 말 현재 16건이 성사되었다.²⁷⁾

남북한은 1989년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 韓國學大會」(AKSE)에서 남북한 학자가 처음으로 공식 접촉한 이래 제3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20여차례 접촉해 왔는 바, 남북한 학자간의 대표적 접촉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5월 14~16일 파리에서 개최된 國際標準化機構(IOS) 제3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표준화하여 국제규격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同年 7월 5~7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는 남북한 및 미국의 政治學者·專門家들이 참가하여 南北軍縮問題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1991년 8월 19~22일 중국 吉林省 延吉에서 열린 「한민족 科學技術者 學術大會」에 남북한 및 해외동포 과학자 1천 4백명이 참가하여 분단 이후 남북한 과학자간의 첫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서 남북한 과학자들은 한국이 제안한 「세계 한민족 과학기술자 공동협의체」 구

27) 위의 글.

성, 차기 학술대회의 평양개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남북간 과학·기술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1991년 8월 30일 중국 長春에서 열린 「東北亞 經濟·技術發展 國際會議」에 참석한 남북한 과학·기술 담당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科學·技術協力會議」를 개최하여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 1991년 10월 「北京 국제전통의약 학술회의」에 참석했던 남북한 보건관계자들이 민간차원에서 한의학분야의 남북교류에 구두로 합의하였다.²⁸⁾
- 1991년 11월 25~30일 북한 여성대표들이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여성 토론회」에 참석함으로써 한반도내의 첫 학술직교류가 이루어졌다.
- 남북간 학생교류와 관련하여서는 1991년 8월 12일 「서울대학생 기자연합」과 북한 대학생이 판문점에서 최초로 접촉을 가진 바 있다. 또한 同年 9월 4일 전국대 국문과 학생들이 신청한 「북한의 언어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북 학술답사계획」이 순수한 학술교류 차원에서

28) 이들간의 합의내용은 남북 상호간 한의학 정보 및 인적 교류, 한의학 국제화를 위한 서울·평양·북경 등 5대 도시를 주축으로 한 연례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한약재 직교역 활성화 등이었다.

승인되어 2차에 걸친 판문점 실무접촉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가중되는 개방압력 속에서 남북간 접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북한 당국은 이미 참석을 약속했던 국제학술회의에 북한 학자들을 불참시키는 등 남북간 학술교류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1991년 8월 중국 延邊 조선족 자치주 延吉市에서 남북한 관련인사들이 南北韓 言語統一을 위한 實務會議를 갖기로 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1991년 8월 21~2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민족철학자대회」에 북한이 학자대표단을 보내기로 공식적으로 통보해 음으로 써 분단 이후 한반도내에서 열리는 첫번째 남북간 학술직교류가 성사되는 듯 하였으나, 결국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한편 북한은 학술교류를 정치적 선동과 선전에 이용하려는 의도하에 「고려학 소장학자토론회」(延吉, 1991. 7. 28~31)와 같은 재야단체나 인사들과의 학술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나. 推進方向

학술·과학분야의 남북교류 대상부문으로는 人文·社會科學分野에서 역사학·고고학·언어학·민속학·철학 등이 있으며, 自然科學分野에서는 기술·의학·약학·천문기상학·해양학·농학·조류학·화학·수학·물리학·지질학·조경학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간 학술·과학분야 교류는 사상적인 논쟁의 소지가 적은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延邊·사할린 등지에서 재외교포 학자 및 과학자들이 공동 참여하거나, 일본·중국 등을 포함한 多者間 學術大會 또는 공동조사·연구에서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접촉하여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데 남북교류의 목적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韓半島內에서의 直交流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내에서의 고고학·역사학·생태계의 공동조사·연구 등에 북한 학자·과학자를 참가시킴으로써 이들이 남북한간의 比較概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술·과학분야 교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역사학·국문학 등과 같이 全體領域 中心이 아니라 特定分野의 特定主題(예컨대 「살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의」, 「춘원사상」, 또는 특정한 학술회의의 공동 참여문제, 특정한 문제발생시 공동협력문제 등)를 선정하여 교류대상화하는 것이다. 이는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류가 학문외적인 것으로 빗나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학술·과학분야중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교류 추진방향을 세분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歷史學 및 考古學

남북간에는 역사학의 연구방법, 해석의 기본원리, 연구목표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나 조사를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歷史觀의 對立이 예상되는 政治·經濟·社會史의 연구는 유보하고 실천이 용이한 文化史, 古代史 研究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⁹⁾

남한에서는 고대사의 實證的 研究가 부족한 실정이고, 반면에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많은 遺蹟·遺物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선사시대에 직접 관련된 民族史 研究에 귀중한 史料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고고학분야, 특히 古代史(고조선·고구려·발해)에 관한 연구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역사학과 고고학분야에 있어서의 남북교류는 共同調查·研究를 통한 남북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의 교류는 한국의 單一民族文化에 대한 연구를 촉진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일체감을 재인식하게 할 것이다.

단계별로는 역사, 특히 民族史分野의 國際學術會議에 공동 참여·접촉을 통한 상호 공동관심사 확인,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 및 학술서적 등 資料交換, 각기 소장하고 있는 遺物의 交換 展示, 남북한 學術會議 開催, 쌍방 지역의 民族遺物과 遺蹟地에 대한 共同調查·開發 등의 순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29) 역사학, 고고학을 비롯한 학술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姜光植 編, 「南北 學術交流 與件診斷 및 對備策 摸索」 참조.

구체적으로는 해방 이후 남북한이 발굴한 고분의 공동조사 및 자료교환, 쌍방 지역에서 발굴된 석기·철기·청동기시대 자료교환 내지는 공동조사 등이 가능하며 나아가 한국 古代史에 대한 명확한 史的 紛明과 더불어 古代 아시아 文化交流史를 체계화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言語學

남북간의 異質化된 言語構造를 장기적으로 統一시켜야 한다는 목표하에 관련분야 학자교류 및 공동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차이를 줄이고 맞춤법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³⁰⁾

언어학에 있어서의 교류는 남북간의 이질화와 대립적인 요소가 비교적 적은 분야부터 시작한다는 원칙하에 「方言資料交換, 方言共同調查, 古語資料交換 → 文法의 變遷, 새로운 용어 및 쌍방의 外來語에 대한 공동연구 → 맞춤법·표준어 설정」의 순서로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언어학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언어교류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국어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북국어연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30) 남북한 言語의 異質化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고영근, “남북한 언어·문자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1),” 「주시경학보」, 제2권 (1988); 홍연숙, “남북한 언어개념의 이질화 연구,” 「南北韓 比較研究論叢」 (서울: 國土統一院, 1977).

민족어 통일작업을 실행할 관련자(정부 당국자·학자)들의 실무회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自然科學 및 技術

과학·기술분야의 교류는 타분야에 비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비교적 적고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교류 등 타분야에 대한 波及效果가 크다는 사실을 利點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용어의 한글화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자 등 尖端科學分野의 학문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수학·화학·물리 등 순수 自然科學分野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에는 지나치게 어두운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상호 관심과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나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수준이 비슷한 분야에서 비 경쟁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산업·경제 등 타분야에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북한 주민의 실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수학·물리학 등의 基礎科學分野에서의 공동연구, 생물학·해양학 등을 포함한 環境分野에서의 연구자료 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비무장지대내의 생태계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의·약학분야에서 한국 고유의 전

염병, 풍토병에 관한 관련학자 및 자료 교환과 공동조사·연구, 농약 공동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西海岸 汚染實態, 동해의 海洋調查를 비롯한 남북한 水資源의 공동조사 및 활용 방안 공동개발이 가능하며, 일본·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 環境改善을 위한 國際協力에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분야별로 남북한 학자들의 경쟁적 연구, 남북한 학생들의 실력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한 競爭的 인 交流·協力を 유도할 수도 있다. 경쟁적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 남북간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남북한 현대화에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研究課題를 공동개발하여야 한다.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간 自然科學分野 용어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교류·협력상의 선행조건으로 쌍방간 學術用語集을 辭典形式으로 편집·출판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교류는 학문적 체계와 기술적 기반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부 분야별 科學·技術 標準化 및 科學·技術 用語辭典 공동편찬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많은 學術業績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開放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1995년 삼지연 동계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북한은 藥物檢查技術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실정이므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연과학·기술분야의 교류는 人的交流와 物的交流,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人的交流에는 자연과학자 중심의 학술교류와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교류를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기초과학부문 과학자 중심의 純粹學術交流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 信賴가 구축되면 다음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교환방문 등 實質的인 交流가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기술자의 상호방문을 통한 產業技術交流가 가능할 것이다.³¹⁾

物的交流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기초과학분야의 기술정보 및 기상정보 등 非商業的인 技術情報 를 교환하고, 점진적으로 產業技術情報 교류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군사적인 영향력을 내포할 수 있는 물적 교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야 하며, 특히 군사목적으로 전용되기 쉬운 품목은 COCOM이나 군사비밀보호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여 軍事技術의 유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제 1 단계: 資料交換 및 南北韓 學者 접촉·교류
 - 관련 교류분야에서의 쌍방 자료교환

31) 변병문,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 「통일한국」(1991. 7), pp. 34~35.

- 제 3국에서의 국제학술대회 공동참여: 延邊·사할린 등지의 재외교포학자 주최 한민족학술대회
 - 국제학술회의 및 국내학술행사 개최, 북한 학자·과학자 초청
 - 학자·과학기술자의 교환방문
 - 남북한 대학생 조국순례 대행진 추진
- 제 2 단계: 南北韓 共同調查·研究事業 실시
- 고대사·언어학 공동조사·연구
 -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연구
 - 한국의 과학재단과 북한 과학기술위원회 산하기관
인 북한 과학원간의 교류 추진
 - 수학·화학분야의 남북한 경시대회 개최 또는 세계
경시대회에 남북한 동시 참여
 - 판문점내 남북 학술회의장 설치: 각종 학술자료
전시, 남북간 학술회의 개최
- 제 3 단계: 政府 次元의 協力方案 모색
- 남북한 정부 당국간 남북 학술 및 과학·기술 교류
에 관한 시행세칙 수립
 - 대학·연구소간 자매결연 추진
 - 과학도시간 자매결연(대덕단지와 북한의 평성과학
시)
 - 학자·학생·과학자의 교환사업 추진(예: 교수교환

제 및 박사후 과정에 대한 양국간의 연수사업)

- 남북한 역사도서·국어사전·교과서 공동편찬

3. 文化·藝術分野

가. 推進現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1991년 9월 30일 현재 문화·예술분야의 남북한 인적 교류현황은 82건 신청, 55건 승인에 9건이 성사되었다. 특히 1990년 말부터 문화·예술분야의 남북한 교류신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991년 9월말 현재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남북간 접촉·교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음악분야에서는 제의 13, 성사 3, 미술분야에서는 제의 17, 성사 1, 영화분야에서는 제의 6, 성사 1, 기타 분야에서는 제의 94, 성사 1 등으로 총 130건이 제의되어 6건이 성사되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1985년 9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예술단의 교환공연이 있은 후 1990년에는 평양 「범민족통일음악회」와 서울 「송년전통음악회」 등 남북예술단의 상호 교환공연 및 음악인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0년 뉴욕 「남북영화제」, 1991년 5월 일본의 「동해국제예술제」와 중국 北京의 국제고려학회 주최 「남북코리아서화전 및 세미나」, 동년 8월 17~18일 소련의 사할린에서 고려평화통일지지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1991 통일 전통민속예술제」 등 제3국에서

의 문화인·예술인들의 접촉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남북 전통예술·문화교류전, 남북 전통공예자료교환, 남북 전통미용문화제(1991. 8. 17~18) 등 다방면에 걸친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나. 推進方向

文化·藝術分野의 남북교류는 문화·예술에 남북간 이질적인 체제의 政治·思想性이 깊이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內容과 形式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류·협력 추진 시 남한 문화의 우월성을 부각시키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最小政治性·名分性·同質的 相互接近 可能性 등의 요건이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同質的·傳統的 要素가 많은 부문의 교류를 먼저 추진하고 異質的·當代的 要素가 우세한 것을 나중에 추진하며, 또한 靜態的·事物的인 부문의 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動的·行爲的·言語的인 측면이 강한 부문을 나중에, 그리고 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普遍的·感性的 부문에 관계된 것을 선행하고 歷史的·現實的인 것을 나중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전통예술, 전시예술, 기록영화, 사극물부문에서 먼저 교류를 실시하고 공연예술(무용·연극·가극), 영화, 사회주의적 예술관이 반영된 현대예술(조선화·혁명가극·현대무용) 등의 분야는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실시한다.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의 基本類型은 인적 요소를 동반하지 않는 예술작품 및 기록매체 교류(문학작품·미술품·공예품·악보·영화 필름 등), 인적 요소를 동반한 예술작품 교류(음악·무용·연극·민속예술놀이 공연 등), 관람·감상자의 교류 및 예술가·예술관계자의 상호방문·접촉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남북간 문화·예술교류는 단시일내에 실현되기 어려우며 설혹 실현된다 하더라도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성이 극명히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남북간 직접교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 整地作業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예술분야의 交流主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조선문학예술동맹으로 접촉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북교류를 신청·계획하고 있어서 정부와 민간예술단체간의 사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금까지 문학분야의 남북교류는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펜클럽 등 문학 단체별로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나 남북한 당국의 「파트너 선택권」에 따른 이해가 엇갈려 성사된 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주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협력을 위한 民間藝術機構協議體 혹은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고 이 기구가 실행상의 제반 문제를 담당하면서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각 예술분야 실무관계자들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순수 예술차원 이외의 문제가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남북 문화·예술교류에서 一貫性을 유지하면서 開放社會의 多樣性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예술관련 정보나 자료교환, 그리고 국제미술전시회나 국제연극·영화·무용 페스티벌에의 동시참여를 통한 제3국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같은 間接交流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남북간 예술교류는 일반대중의 참여를 위해 한반도내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하여 交流原則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혁명가극 문제로 남북 예술단 상호교환이 무산된 전례에 비추어 남북교류의 최소한의 前提條件으로 상대방 체제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류추진시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문학, 영화, 음악, 전통예술 등으로 세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文 學

文學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理念的·文化的差異가 극명하게 노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학교류는 작품집 교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便宜性이 있는 반면 문학작

품에 내재된 相互葛藤·對立的 要素는 연극·영화 등 공연예술과 더불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남북교류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³²⁾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학장르가 공존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극단적인 參與文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문학교류는 남북간 이질화 극복을 위해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일치시키고 북한 지식인과 대중의 意識 自由化·開放化를 유도한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류의 우선순위를 보면, 타분야의 교류와는 달리 직접적인 문학작품 교류보다는 상호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위한 人的 交流를 선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높다. 또한 당대의 문학은 이념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분단 이전의 고전, 근대문학의 작품교류, 공동연구부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당대의 작품을 교류해야만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호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映 畫

映畫는 다른 예술에 비해 대중적 호소력과 선전적 기능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체제와 이념에서

32)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 및 藝術分野 交流方案」(서울: 國土統一院, 1985), p. 103.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류가 용이하지 않다. 영화와 같은 사실주의적 극예술의 상호교류는 양체제간의 思想的 差異를 추상적 수준이 아닌 일상생활의 구체적 수준에서 노출시킬 수 있다. 한편 北韓映畫는 기술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상 理念教育이나 體制宣傳手段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작품 선별시 신중한 검토가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의 目的主義的 藝術과 남한의 대중 영합적 상업주의 예술이 표면적으로 비교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³³⁾

현 상황에서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영화교류는 作品交流로서 장보고·연개소문 등을 소재로 한 史劇物이나 홍길동전·임꺽정전·춘향전 등 古代小說 및 說話를 소재로 한 영화, 어린이용 만화영화·인형극 등 애니메이션 영화를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교류가능한 분야는 연기자들의 합동출연, 로케이션장소의 제공 등이며 점차 영화의 합작제작을 비롯, 영화기재와 제작기술의 상호교류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音 樂

音樂分野의 남북교류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성 메시지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음악의 특성때문에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文化·藝術分

33) 북한의 예술에 대해서는 김문환, 「북한의 예술」(서울: 을유문화사, 1990)을 참조.

野의 남북교류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音樂交流는 이미 이루어진 범민족음악제나 송년음악제 등과 비슷한 형태의 연례적인 음악회를 남북한에서 번갈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도 높다.

(4) 民俗藝術

전승예술·민속놀이와 같은 民俗藝術部門은 남북간 예술교류 영역중에서 교류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 부문은 남북간 이념적 분열과 이질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傳統社會의 民俗藝術이기 때문에 이질성이 여타 예술 보다는 적고 民族的 同質性의 回復이라는 교류의 명분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면의 접촉과 교류는 葛藤과 對立을 최소화하면서 基層文化의 공동근거를 확인하고 도식적 社會主義 文化 속에 억압되어 있던 북한 주민의 民族的 感性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북한 대중의 意識開放化를 유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전통민속예술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반면에 民俗藝術의 現代的 再創造에 대한 연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가능한 주제는 傳統的 公演藝術의 現代的 繼承方案(예컨대 판소리와 창극) 공동연구, 민속예술의 傳承地에 대한 남북한 학자의 공동 현지조사,³⁴⁾ 민

34)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의 「정선아리랑」, 황해도의 「봉산탈춤」, 함경남도의 「북청사자놀이」, 경상북도의 「하회탈춤」 등을 남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답사 할 수 있을 것이다.

속잔치 공동개최 등이 있다.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제 1 단계: 資料交換 및 間接接觸
 - 남북 문화·예술 자료교환: 무대예술중 인형극·가면극 형태와 소품 자료, 국악·민요의 가사·악보, 무용공연 테이프, 순수기록영화필름, 순수미술품, 공예기술의 자료와 현품, 전통예술의 문헌자료와 민속연구
 - 인적 교류
 - 국제적 문화예술 행사에 공동참여
 - 해외교포 주최하의 한민족 예술축제에 공동참여
 - 문화·예술인 초청 방문
 - 순수예술분야 및 민속예술단 상호 교환공연(북한 곡예단 초청공연)
 - 중국·일본과 공유하는 민속놀이 공동주최(정월 대보름의 줄다리기 놀이)
 - 작품 교환전시회(고대미술품이나 고대시대를 소재로 한 작품, 민속자료나 문헌·공예품 → 현대 미술의 조각품이나 회화·사진작품 전시회)
 - 각종 인적 교류시 예술단 파견 확대
 - 문화행사 상호초청

◦ 제 2 단계：共同調查·研究

- 민족문화 공동연구： 고미술품의 공동조사·발굴,
민요·민속놀이의 현지 공동조사·연구
- 비이념적 순수문학·예술작품의 공동연구 및 전시
회 교환개최
- 무용·연극 등 무대예술의 교환공연 및 공동출연
- 영화 부문에서 문화영화·순수기록영화 교환방영
- 민속잔치 공동개최
- 해외 전시회·해외공연 공동개최

◦ 제 3 단계：共同合作

- 「남북문화협정」 체결 추진
- 문화·예술단체간 자매결연 및 남북 문화·예술 연
수생 교환
- 남북 문화·예술행사 공동개최 및 영화 공동제작
- 문화·예술 공동조직 결성： 전통민속 예술단 및 가
곡합창단 조직
- 문화·예술 공동협의기구 결성

4. 體育分野

가. 推進現況

최근 들어서 體育分野의 교류는 타분야의 남북교류에 비해
급진전되어 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1988년 12월 북한

이 「北京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갖자고 제의함으로써 그후 9차에 걸친 남북체육회담과 6차의 실무회담이 열려 단일팀構成原則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 때의 회담은 비록 합意事項履行保障裝置를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여 결렬되었으나 남북이 최초로 구체적인 합意事項 도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北京 아시안게임에서 공동응원과 남북 체육관계자들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중단었던 南北體育會談이 재개되고 축구경기의 교환개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분단 이후 최초로 제1차 「남북통일축구대회」가 평양(1990. 10. 11)과 서울(1990. 10. 23)에서 열렸으며, 그 후 4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2개 주요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 4. 24~5. 6)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 6. 14~30)에 최초로 단일팀으로 출전하였으며, 대회에 앞서 남북한 축구선수들이 남북을 오가며 두 차례의 평가전을 가졌다.³⁵⁾

그러나 단일팀 출전 이후 한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하여 통일축구 정례화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남북 체육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5

35) 이 두 차례의 평가전은 남북한에 중계되어 남북 최초의 방송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차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북한 유도선수 리창수의 귀순 등 정치적 구실을 내세워 거부해 왔다.

나. 推進方向

南北體育交流는 스포츠가 非政治性과 國際性을 지니고 있으며 체육교류를 통하여 체육부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제무대에서의 성과가 즉각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체육분야에서 남북간 교류대상분야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포함하여 남북간 또는 제3국과의 體育大會 개최이며, 체육분야 관련 技術·施設·裝備의 교류 및 人的 交流를 포함한다.

교류·협력 初期段階에는 상호 친선교환경기나 시범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선교환경기는 감정유발이나 극렬대결을 지양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民俗競技(씨름·널뛰기·활쏘기 등)부터 단계적으로 개최하고, 그 다음에는 쌍방간의 수준이 비슷하고 신체적 접촉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배구·탁구·배드민턴 등 구기경기와 육상·수영·사격 등 기록경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슬링·권투 등 鬪技種目과 농구·핸드볼 등 球技種目은 교류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⁶⁾

36) 崔常喆, “南北體育交流 推進方向에 關한 研究,” 「民族統一의 摸索」, 統一家族論文集 第1輯, p. 218.

따라서 초기단계의 交流種目 選定基準은 신체적으로 직접접촉이 불가피한 종목과 감정유발이 쉬운 종목은 가급적 피하고, 심판의 판정이 용이해야 하며,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리한 경기종목(탁구·축구·체조 등)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발생되는 충돌과 남북한 주민간의 감정악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측 선수단에 대한 應援團을 구성·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체육교류는 타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경기 개최시 기자단의 상호방문 및 경기실황의 상호중계로 방송교류가 실현가능하며 북한의 국제경기대회 개최시(1995년 삼지연 동계아시아대회) 도핑테스트 기술 및 장비지원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교류도 가능하다.

남북체육교류는 교류의 접근형태에 있어 국제무대에서의 접촉에서 국내로, 단일종목별 교류에서 종합대회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육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체육교류가 단일팀의 경우와 같이 일과성의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교류와 관련된 남북한간 입장차이에서 비롯되는 장애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交流窗口問題에 있어서 남한은 體育會談을 통한 체육교류를 공식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정부간의

공식적인 교류보다는 북한의 선동이 보다 쉽게 작용할 수 있는 民間交流를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남한의 다양한 체육단체들의 대북교류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와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南北體育交流全擔機構」를 설치하여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를 지원·조정함으로써 교류의 制度化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남한은 민족적 이질화 극복과 신뢰조성을 위한 남북 體育直交流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남북 직교류로 인한 體制開放을 우려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성과를 국내적 선전에 이용할 수 있는 「合作」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미 성사된 통일축구(「交流」) 정례화와 축구·탁구 단일팀(「合作」) 정례화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양측의 기본 접근방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동시에 남북교류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체육과 같은 비정치적 교류도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정치적 행사인 「8·15 범민족대회」의 「통일마라톤대회」 포함)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과 사전에 原則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운동선수들의 망명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段階別 交流 協力方案

- 제 1 단계: 交流基盤 構築
 - 남북한 개최 국제행사 상호참가
 - 종목별 친선경기, 시범경기 개최 및 정례화: 전통 민속경기 개최, 서울-평양 축구대회 및 역전 마라톤대회
 - 이북 5도민 체육대회 개최
 - 체육관계 행사개최, 상호초청
 - 체육관련 시설·장비 교류 및 지원
- 제 2 단계: 共同協力 形成·推進
 - 남북단일팀 구성 출전 및 공동훈련: 기존 단일팀의 정기평가전, 국제경기 단일팀 참가종목 확대,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³⁷⁾
 - 체육관계자의 상호방문 및 지도자 교환
 - 소규모 국제친선경기대회(예컨대 한국·북한·중국·일본 등 4~5개국 참가규모) 공동참가
 - 체육학술회의 공동개최
- 제 3 단계: 交流·協力體制 構築
 - 남북체육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추진

37) 남북단일팀 구성이 일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제1단계의 체육교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북단일팀 구성 정례화
- 남북한 지역에 체육시설 공동건설
- 「남북체육인협의회」 등 남북한 체육단체간 종합기구 설치·운영
- 국제체육행사 공동유치, 공동주최
- 남북한 종목별선수권대회 및 종합체육대회 공동주최 또는 윤번제 주최
- 남북 올림픽위원회 통합, 국제체육기구에 단일조직체 가입

5. 觀光分野

가. 推進現況

현재 남북간 관광분야의 교류는 觀光資源의 共同開發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1970년대말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觀光都市 및 觀光名所 開發에 주력하고 있는 바, 현재 금강산을 10만명 수용능력을 갖춘 세계적 명승지로 조성하여 연간 5억달러의 외화획득을 목표로 개발·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총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開發費用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지난 1989년 1월 말 남한의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대성은행 사이에 금강산지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체육청소년부는 남북한이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 觀光特區로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1991년 9월 30일 현재 관광분야의 南北人的交流現況을 보면, 24건이 신청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성사된 것은 6건 뿐이다.³⁸⁾

나. 推進方向

남북한 관광교류는 資料交換·人的交流·觀光資源共同開發 등의 공동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관광산업이 적은 투자를 하면서도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을 해외에 선전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최근에 들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 외국과의 合營對象 5개 분야중 觀光事業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분야와 더불어 觀光分野의開放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관광교류는 또한 북한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國民觀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觀光客間의直接的인 交流를 통해 북한의開放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그 의

38)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3호 (1991), p. 5.

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관광교류는 다른 사회·문화부문의 교류와는 달리 북한에게 經濟的 實益을 제공할 수 있는 觀光資源의 共同開發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經濟交流, 南北韓住民의 相互訪問 등 타분야로의 波及效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觀光分野의 南北交流 必要性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한의 관계자(관광학자·관계공무원·관광기업인)들이 접촉하여 觀光資源 相互評價團을 조직하고 쌍방간의 관광자원개발 관련 現況資料 등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 공동 주최하에 관광교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지 공동개발을 통한 經濟的 實益이 북한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관광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관광교류·협력 방안은 직접적인 방안과 간접적인 방안을 구분할 수 있다. 直接的인 方案으로는 관광관계자들로 구성된 觀光會議 共同開催, 관광자원 相互評價團을 구성하여 상호평가 실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觀光資料 상호교환, 觀光博覽會 공동개최, 남북한 共同觀光弘報 및 販賣活動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間接的인 方案으로는 국제항공사들의 남북한 共同就航, 국제여행사들의 南北連繫商品 개발지원, 외국인 관광객들의 自

由往來地域 설정, 외국관광객들의 남북한 무비자여행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방안과 간접적인 방안을 효과적으로 배합해서 단계별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제 1 단계: 資料交換

- 관광자료 교환: 관계문현·그림·사진·포스터 등
- 남북한 관광토산품 교류
- 관광자원 상호평가단 구성: 관광자원 개발현황 교류

◦ 제 2 단계: 共同調查·研究

- 관광자원 상호평가단 활성화
- 남북한 관광교류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 국제관광박람회 공동개최(판문점): 관광토산품 및 관광상품전시
- 관광자원 공동조사
- 관광실무단 상호교류
- 국제항공기 남북한 동시취항

◦ 제 3 단계: 共同合作 및 人的 交流 擴大

-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 관광자원 공동개발 추진: 금강산·설악산지역, 남

북 동해안 국도연결

- 남북간 항공기의 공동취항 추진
- 비자발급상 제한요건의 점진적 해소
- 남북교류 전담 관광여행사 공동설립·운영
- 관광자유지역 및 국제관광지 설정으로 국내관광객들의 자유관광왕래 추진(화진포·삼일포지역, 금강산·설악산지역)
- 외국인 관광객의 남북한 공동관광 허용
- 남북관광단 구성, 남북간 상호교류 및 공동해외여행 추진

6. 言論·放送分野

가. 推進現況

한국 정부는 그간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言論·放送의 全面開放을 제의해 왔으나 북한은 언론·방송분야의 교류확대로 인한 북한사회의 개방을 우려하여 이를 기피해 왔다.

따라서 언론·방송분야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남북교류는 남북간의 각종 교환방문이나 회담시 남북한 언론인들의同行取材에 限定되어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91년 5월 8일과 12일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 남북단일팀 평가전을 남한과 북한 방송이 직접 생중계함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방송교류가 실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 방송기술진들의 상호왕래도 이루어졌다.

1991년 7월 12일 **盧泰愚**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내에 송출방식 변환시설을 설치, 남북 양측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비정치적 내용의 TV 녹화 프로그램 교환방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³⁹⁾ 정부는 초기단계의 방송교류사업으로 **南北共同放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開發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다음 단계로 위성방송을 통한 상호 완전동시방송과 비무장지대내 **南北共同放送局** 설치·운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991년 8월 민간회사인 「남북교역주식회사」가 북한에서 발간된 「리조실록」 번역본을 국내에 공식 반입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첫번째 민간출판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推進方向

언론·방송분야에서 남북간 交流·協力對象은 신문·방송·출판부문이며, 교류가 가능한 범위로는 보도자료 교환, 언론인 교류, 자유방송청취, 자유취재활동, 방송·통신기술 공동연구·

39) 1991년 7월 12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5기 출범회의에서의 **盧泰愚** 대통령 開會辭 참조.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분야의 남북교류는 언론·방송의 본질상 政治性과 理念性을 내포하기 쉬우며, 政治的인 宣傳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분야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언론·방송의 개념, 제도, 방송시설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북한 언론·방송교류의 활성화는 이념·제도·미디어 기구운영·기술적 측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에는 남한에서와 같은 개념의 신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노동당·정권기관·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機關紙가 있을 뿐이다.⁴⁰⁾ 북한은 라디오의 경우 정규방송인 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 이외에 대남선전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민주의 메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TV방송의 경우도 대남선전용으로 설립된 「개성 TV방송국」을 통해 對南政治煽動을 계속하고 있다.⁴¹⁾ 따라서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언론·방송교류의 세부적인 基本方針이 확고히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정부 당국자간에 상호비방·중상 금지 등 基本原則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남북 언론·방송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國內法의 整備에 대해서도

40) 북한의 언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유재천, 「북한의 언론」(서울: 을유문화사, 1989); 김영주, “언론정책과 언론구조,” 고현숙 외, 「북한 사회와 구조의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國土統一院, 「북한의 언론·출판분야 사업총화집 1949~1970」(서울: 國土統一院, 1974).

41) 북한의 방송에 대해서는 강현두·이창현, “북한 방송의 철학적 기초와 사회적 기능,” 「방송문화」, 통권 94호 (1989. 4) 참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채널선택권 제한제도의 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 방송교류에 앞서 남북한 양측이 채널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周波數의 事前調整과 妨害電波 發射中止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방송방식도 서로 다른데, 남한의 경우는 NTSC방식인데 반하여 북한은 PAL방식을 쓰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남북 TV방송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거대용량의 中繼所를 판문점 등 중립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放送交流施設에 대한 財源이나 物資을 우리측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교류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언론·방송교류는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정치적·이념적 내용이 배제된 體育·文化行事 등의 보도자료·신문·잡지 및 기타 간행물 등을 교환하는 物的 交流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의 경우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문화 및 역사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한 비정치적 프로그램을 상호합의하에 기존 채널편성에 삽입하는 방향으로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송교류는 독립안전으로 다루기보다 스포츠·문화행사나 정치회담, 남북 이산가족찾기, 한반도 생태계 공동탐사 등과 연계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 직접교류에 앞서서 國際機構를 통한 다자간 교류·

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迂迴的인 交流도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1991년 9월 1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방송연맹」(ABU)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들과 프로그램 교류, ABU 공동제작사업 참여, 뉴스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간 방송교류도 ABU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남북간 언론계 인사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人的交流는 상당한 물적 교류, 우회적·간접적 교류가 축적되고 남북간 정치적·이념적 대립이 감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준에 있었던 각종 문화행사나 남북회담시 동행형태로 이루어진 남북한 언론계 인사들의 접촉·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언론·방송인의 실질적인 상호교류에 앞서 외국기자들을 남북한에 초청하여 자유취재활동과 남북한 왕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규방송의 자유청취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휴전선지역에서의 확성기방송 등을 통한 상호 체제비판·비방·모략방송을 중단하고, 일정지역을 설정하여 자유취재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自由取材活動은 초기단계에는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올림픽 등 각종 국제체육경기 및 체육행사, 국제음악제·연극제·민속경연대회 등 문화행사 및 민속행사 그리고 민속유적지에 취재범위를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물적·인적 교류의 축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언론·방

송관계자, 정부당국이 판문점에 교류협의기구와 교류운영기구 등을 설치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언론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南北言論一般協定」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언론인들의 취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쌍방 언론인들의 자유취재활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기자 자유취재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제반 실무업무를 전담할 공동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出版部門에 있어서 남북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著作權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저작권 정보센터」의 설립, 저작권에 관한 협정 체결, 저작권 교류기구의 설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제 1 단계：交流基盤 構築
 - 언론교류에 관한 원칙 합의
 - 정치성·이념성이 배제된 내용의 신문·방송·보도자료 교환
 - 각종 회담 및 인적 교류시 언론계 인사 파견 확대

- 제 2 단계：共同協力 形成·推進
 - 언론인 상호접촉·의견교환 및 상호초청취재 추진：

관광지 및 고적지 취재, 체육경기 참관 및 취재,

국제행사 및 경축행사 취재

- 언론인 세미나 개최 및 상호초청
- 외국기자 동시초청 및 자유취재 보장
- 특정지역내의 자유취재활동 보장: 체육·문화·민속 행사 우선
- 상호 모략·비방방송 및 전파교란 중지
- 비정치적 분야의 라디오·TV프로그램 교환·중계

○ 제 3 단계: 交流·協力體制 確立

- 「남북언론일반협정」 체결
- 방송자유청취, 신문 자유구독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추진
- 방송통신기술 공동연구
- 남북 공동취재단 구성, 언론인 자유왕래 및 취재 활동, 남북 공동해외기자단 구성, 해외통신 동시 보도, 남북 언론인의 공동 국제진출 모색

7. 宗教分野

가. 推進現況

최근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에서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南北間宗教交流方案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회에서는

과거 범종단차원에서의 대북접촉신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계파별·개인별 접촉신청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평신도차원에서의 대북교류 신청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⁴²⁾ 또한 시행초기에는 순수한 宣教次元에서 대북접촉신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북한신자들에 대한 무상지원·신학공동연구·성지답사·종교단체들간의 자매결연 추진 등 신청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1991년 9월 30일 현재 종교분야의 南北 人的 交流는 신청 58건, 승인 45건, 성사 10건으로 집계되었다.⁴³⁾

1989년 이후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과 함께 매년 南北 共同禮拜를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개신교의 여러 교단에서는 북한 교회대표자들을 총회나 대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고 성탄절 예배나 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북한 교회의 교회당 건축을 위한 基金募金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1991년 9월 24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는 곽선희 목사가 국내 거주인사 중 개인자격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봉수교회에서 설교하였고, 북한의 기독교지도자들과 남북간

42)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호 (1991), p. 13.

43) 위의 글.

牧會者 交流問題 등을 협의하였다.⁴⁴⁾

1991년 10월에는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개최된 「한민족 불교지도자 연석회의」에서 남북한 불교지도자들이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統一問題를 토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는 있었으나 46년만에 처음으로 統一祈願 合同法會가 열렸으며, 統一巡禮團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推進方向

남북간 종교교류란 쌍방간의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들간의 접촉·대화·왕래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상과 이념의 벽을 넘어서 信仰이라는 강한 공통분모를 갖고 출발하므로 同質性 回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宗教의 自由」가 허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反宗教의 自由」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천도교인협회」 등의 宗教團體가 있으나⁴⁵⁾ 名目上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한이 교회나 사찰을 신축하고 있으며 남한 종교인의 개인자격 방북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향후 이 분야에서의 남북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44)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3호 (1991), p. 1.

4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 136.

남북간 종교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한의 다원화되어 있는 수십개 교단과 종파들이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일조직과 기구를 가진 천주교의 경우 남북 교회교류를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조선기독교도연맹」과 교류의 길을 마련한 바 있는 「한국교회협의회」(KNCC)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조심스럽게 교류나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개신교회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교류와 합동예배·초청방문 등을 제안·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종교인들의 個人的 訪北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와의 事前 協議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종교교류의 목적과 관련 남한의 종교인들은 대부분 北韓宣教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의 경우 선교를 목적으로 「북한 선교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교류는 교세확장이 아닌 民族의 和解와 統一을 목적으로 하는 平和宣教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족적 통일이라는 공통과제에서 출발해서 보다 현실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점차 宗教의 社會的 機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段階別 交流·協力方案

- 제 1 단계: 交流基盤 構築
 - 종교서적 등 물적 교류
 - 종교인 접촉·교류: 종교단체를 통한 접촉(한국기독교협의회, 기독교남북대책협의회, 한국평화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 남북교류추진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남북 불교교류추진위원회, 남북 불교전통의식교류협의회)
 - 남북 합동의식에 상호초청: 불교연등제·합동기도회·공동미사·천도교 천인기도일 등 종교행사 및 기념일
- 제 2 단계: 共同合作 形成·推進
 - 남북 합동의식 교환개최: 부활절·성탄절·개천절·초파일·세계성체대회·공동기도주일⁴⁶⁾. 기독교 평양복음회대회 등을 통한 합동의식
 - 종교단체 자매결연
 - 성지 교환순례
 - 교리토론회 개최

46) 1991년 2월 WCC 제7차 총회에서 「8. 15」 직전 週日을 남북 공동기도주일로 설정하여 각각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 3 단계: 交流·協力體制 確立
 - 합동기도원 건립추진(한라산·백두산·판문점)
 - 성서·경전 공동집필 및 편찬사업 추진
 - 교리 공동편찬사업 추진

IV. 結論

1. 交流·協力方案이 統一環境에 미치는 波及效果

가. 경제 교류·협력방안의 波及效果

前述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단계적 방안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첫째, 間接交易段階의 경제교류·협력방안인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3者間 貿易은 東北亞經濟圈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간 相互依存性 증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남북한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어 남북한의 國際的 位相을 제고함과 동시에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생필품 부족을 해소시켜 北韓住民의 福祉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다중적인 효과를 가진다. 또한 海外僑胞를 적극 활용한 간접교역 활성화는 통일에 대한 해외교포들의 관심과 역할을 증대시켜 統一環境 造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둘째, 直交易段階에서 추진될 남북간 교역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받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간 공동보조는 남북간 繁張緩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남북간 직교역을 통하여 남한 공산품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인 바,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比較概念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開

放·改革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通信網 및 輸送網의 연결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人的 往來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통신망과 수송망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문화분야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남북간 인적 교류는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제3국에의 남북한 合作投資로 남북한은 상호협력을 국제적으로 과시함으로써 한반도 統一에 대한 國際的 協調를 유도할 수 있으며, 남북한 경제인을 포함한 勞動人口의 相互接觸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이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분단 이후 심화된 남북간 사회·문화적 異質性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상시적인 남북한 주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축적되어 남북한 주민의相互理解가 증진됨으로써 한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합작기업을 운영함으로써 資本主義的 企業原理의 우수성을 북한이 배우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보다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資源의 共同開發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남북한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북한 경제의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한 남북간의 生活隔差 縮小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統一費用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

하여 북한의 外貨獲得을 현실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폐쇄적 北韓經濟體制를 상호의존적인 國際體制로 편입시키는데 궁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본격적인 남북간 技術 및 資本의 合作을 통하여 經濟統合의 중요한 요건인 남북간 產業構造 調整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교류·협력방안의 파급효과는 북한으로 하여금 資本主義體制의 效率性과 民主主義體制의 優越性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相互共存時代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나. 사회·문화 교류·협력방안의 波及效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한 평화적 통일의 수단인 南北對話와 南北交流 가운데 社會·文化分野의 교류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에 비해서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사회·문화교류는 사회개방화와 더불어 의식자유화, 텔이념화, 문화적 보편화를 포괄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인 바, 단기적으로는 극히 제한된 분야와 범위내에서 부분적 교류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사회·문화교류가 실행될 경우 상당한 波及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소지가 있는 부문을 제외한다면

관련분야에서 상호 연구수준의 발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지식인 및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政治社會化와 宣傳策動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난해 온 바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학술·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발전되어 있으며 전통문화도 잘 계승되어 왜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북한의 선전전략을 불식시킬 수 있다.

셋째, 폐쇄된 북한사회에 개방세계의 생활과 가치를 유입시킴으로써 획일적인 理念支配體制에 대한 批判意識을 촉발 또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지식계층을 비롯한 일반대중의 본질적인 意識 自由化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직 잔존하고 있는 민족동질성의 근거를 상호 확인하게 하여 남북간의 極限的 對立 해소 및 緊張緩和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분야는 체제에 대한 위협과는 무관한 분야이고 남북한 쌍방에게 모두 유익하기 때문에 緊張緩和와 信賴回復을 초래하는 기반이 된다.

다섯째, 상호접촉을 통한 不信解消 및 紐帶強化로 사회·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이질적인 문화구조의 創造的 同質化를 통한 남북한 單一文化圈을 형성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사회의 閉鎖性과 硬直性을 이완시켜 開放化를

촉진·유도할 수 있다. 즉 남북간 교류·협력은 開放社會와 閉鎖社會의 相互開放을 추진하는 작업인 만큼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부담은 폐쇄사회쪽이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으며, 교류·협력의 폭이 넓고 그 지속기간이 오래될수록 북한은 이를 소화하기 위한 체제내적 부담을 더 많이 안게 되며, 경직된 支配構造를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교류·협력의 확대로 인해 북한이 갖게 될 체제내적 부담과 우려 등의 부정적 측면은 구체적인 교류내용과 절차를 조정하고 사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간 이념적·감정적 대립 및 적대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킴으로써 정치분야를 포함한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확대하고 나아가 상호 同質性 回復을 통한 통일문화 창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 波及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綜合的 方案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제분야 상호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 및 상호간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종합적 방안의 몇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迂迴的 接近方案

(1) 海外僑胞 活用方案

중국·일본·소련 및 미주 지역 등에 거주하는 해외교포 수는 5백만명에 이르고 있다.⁴⁷⁾ 북한은 해외동포사회에 대해서 만큼은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사회는 남북간의 높은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남북한 인적 교류에 있어서 海外僑胞는 남북 이산가족의 書信往來와 相逢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재외국민들은 「7. 7 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자유왕래가 허용되어 1990년말까지 400여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⁴⁸⁾ 따라서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소재의 「이산가족 상봉주선단체」, 중국이나 소련 거주 교포들,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계 교포들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해외교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주선단체」에 대한 經濟的 支援은 물론 이산가족들에 대한 情報提供 등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조총련계 일본교포들의 고국방문 및 해외거주 이산가족들의 남북한 동시방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47) 박찬웅, “해외동포사회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유도 방안,” 「통일한국」(1991. 10), pp. 24~28.

48) 統一院, 「北韓概要」(서울: 統一院, 1991), p. 477.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1984년 「合營法」을 제정·발표한 이후 설립된 합작기업의 대부분(약 80%)은 해외동포(특히 조총련계 상공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단계에서 남북한 당국간의 직교역보다는 해외동포사회를 통한 경제교류·협력이 보다 현실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외동포 상공인들에 대해 「交流協力基金」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간접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合作投資」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는 해외동포의 대북한 투자활동을 한국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해외교포의 힘을 근간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한 「市場經濟開發을 위한 國際平和奉仕團」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재력과 해외동포의 전문적 지식 및 재력을 포함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소련과 중국의 경제개발을 시금석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에서의 市場經濟創出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물론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북한의 개방 및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第3國 活用方案

남북한이 분단상황하에서 제3국을 이용한 교류·협력은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제3국이라 함은 세계의 모든 국가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中國·蘇聯·日本 등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이들 국가의 政府 및 民間團體의 協調를 얻는迂迴的인 接近方法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은 소련의 사회주의 포기로 인한 충격을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완화하려 하고 있는 바,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심화시켜 중국이 북한에 대해 改革·開放壓力을 가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韓·中關係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학술적인 차원에서의 協力關係로 발전되어야 한다. 韓·中間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은 民間團體를 통하여 하되 經濟人們이 後援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중국과 북한의 접촉시 한국의 고양된 이미지를 북한에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중국 및 소련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을 이용하여 한국은 대북교류 추진시 對北韓 搬出物品을 中·蘇의 經濟特區에서 생산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교류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중국·한국이 주축을 이루는 東北亞經濟圈과 관련된 學術會議를 개최하여 북한의 경제학자 및 경제인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 경우 장소의 선정문제에 있어, 초기에는 중

국의 延邊地域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로 일본, 한국, 북한의 순으로 회의 개최지를 변경시켜 남북한 인사들이 상대측 지역을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회의 참여 인사의 범위를 초기에는 민간단체 위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중국이나 일본에서 남북한 商品展示會를 공동개최한다. 이 경우 남북한 경제발전의 격차가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토산품 및 특산품의 전시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상품전시회가 정례화되면 점차로 품목을 확대하고 남북한 경제인의 접촉창구를 제도화한다.

나. 남북한 共同事業 推進方案

(1) 남북간 姉妹結緣

남북간 교류·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각계 각종의 분야에서 姐妹結緣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매결연은 네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차원에서 기업간의 자매결연, 둘째, 비수익성 단체간의 자매결연, 셋째,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간의 자매결연, 넷째, 지방행정기구인 도시간의 자매결연이며, 이는 「企業間 → 非收益性 團體間 → 大學間 → 都市間」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企業間의 자매결연은 동일업종 경영인간의 모임을 통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근로자간에도 상호간의 공장견학 등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여 남북간 異質性을 극복하는 대화의 광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둘째, 非收益性 단체간의 자매결연은 스포츠분야에서 시작하여 예술분야로 확산시키고 자매결연 단체간에 정기적인 체육행사나 예술제를 개최하여 그 收益金은 統一基金으로 사용한다.

셋째, 教育機關間의 姉妹結緣은 남북한 대학간의 자매결연을 시발로 초·중·고등학교간의 자매결연으로 확산시켜 남북한의 대학생 및 교육자들 사이의 대화를 확산시키고 서로의 교육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統一 이후의 教育에 대비한다.

넷째, 都市間의 자매결연은 대도시간의 자매결연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중소도시간의 자매결연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都市化의 문제점과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으로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매결연사업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異質性을客服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示範都市의 공동건설·운영

「平和市」 건설계획은 남북간 이질적 요소를 포용하고 융화하여 한민족공동체적 삶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和解와 和合의 都市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1988년 10월 18일 盧泰愚 대통령은 유엔總會 특별연설에

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업으로 휴전선내 비무장지대에 「平和市」를 건설하자”는 「평화시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시범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은 우선 남북 당사자간 합의 하에 비무장지대내 적정지역에 平和地域을 설정하고 平和市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평화시는 도시로서의 자족적 기능을 갖춘 인구 30~50만명 규모가 적합할 것이며, 첨단의 도시기반을 갖추되 비무장지대내의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각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中核都市로 육성하며, 같은 방법으로 입지적 성격을 감안하여 제2, 제3의 「평화시」 건설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가 동서 냉전체제의 최후의 지역임을 감안하여 세계평화와 화합할 수 있는 國際的 開放都市로 발전시킨다.

한편 남북간 합의에 앞서 한국측이 필요한 일부 連繫事業을 먼저 추진해 나간다. 예컨대 자유로 건설, 통일동산 조성, 자유로변의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해 실시하도록 한다. 「평화시」 건설은 도시의 성격상 민족생활 전영역을 두루 포괄하는 示範事業이 될 것이므로 실현가능한 방법론적 시각이 보완된다면 가장 포괄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

- 남북한간 人的·物的 交流의 실질적 창구 설치
 -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 및 가족상봉에 따른 편의 시설 등
 - 남북 공동자유시장, 물자유통시설 등
- 民族和合과 民族共有 傳統·文化 계승·창달을 위한 文化空間 설치
 - 공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청소년 야영장, 공동집회소, 전시·공연장 및 영화관람장 등
 - 민족문화관, 역사박물관, 민속촌, 국제적 동식물 사파리 등

◦ 제 2 단계:

- 學術交流 및 南北 共同研究施設 설치·운영
 - 환경공해문제연구소, 비무장지대 생태계연구소, 민족사회복지연구소 등
- 合作工場, 國際的 療養所 설치·운영

◦ 제 3 단계:

- 통일과정 및 이후 中核的 役割을 담당할 公共機關 설치·운영(「남북연합」의 공동사무처, 남북회담장 등)

3. 우리의 對備策 및 與件造成方案

가. 國內法 정비문제

현재 南北關係를 규율하는 국내법으로는 국가안보 및 공공 질서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國家保安法」과 남북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이 있는 바,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關係法令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國家保安法」은 북한의 당국 및 조선노동당, 사회단체 등을 「反國家團體」로 규정하고 있으며, 잠입·탈출(제 6조), 회합·통신(제 8조) 등의 조항을 두고 있어서,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및 人的交流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1990년 8월 제정)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을 적용한다”(제 3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법률적 장애요소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1년 5월 개정된 「國家保安法」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만 同法이 적용될 수 있다”(특히 제 5조 2항, 제 6조, 제 8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까지도 남북교류·협력을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5년에 제정한 「新形法」(특히 제52조)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교류·협력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 공존체제로 발전되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에 진입할 경우에는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國家保安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人的交流의 확대를 위하여 북한방문을 현행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완화하고 身邊保障覺書 요구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한의 상응하는 정책전환 여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 窓口單一化 문제

정부는 다양한 민간교류주체들의 경쟁적인 대북교류제의를 단일창구내에서 수용하고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창구단일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원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에서 예상되는 제반 부작용을 예방 또는 극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交流·協力 遂行體系를 정비·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내에 각 분야별로 「交流委員會」, 「交流協議會」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규합

함으로써 이들의 대북교류활동을 조정·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基本原則과 施行細則을 제정하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政策指針을 체계화한 후 북한 당국과 사회·문화·경제교류의 원칙에 대한 기본합의에 도달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표성을 지닌 민간교류주체들이 회담을 개최하여 사회·문화·경제교류의 대상,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구단일화 원칙의 적용과 정부의 역할은 다원주의적 사회의 개방성을 수용하여 민간교류주체들의 대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南北協力基金 조성·활용

남북협력기금은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 1조원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1990년 8월 1일 공포한 「南北協力基金法」을 통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남북협력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남북협력기금은 한국만의 기금이므로 북한에 제의하여 南北韓이 같이 參與하여 마련하는 統一基金으로 확대한다. 둘째, 統一基金은 南北合作의 각종 收益事業(예: 예술단 공연·스포츠행사 등)을 통하여 마련한다. 셋째, 남북간의 經濟交流와 協力에서 기대되는 利益의 일부분을 統一基金으로 적립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통일기금이 마련되면 남북한이 협의하여

그 용도를 정하되, 남북간 離散家族 찾기·相逢事業 및 이산가족 왕래시 便宜施設 제공,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할 국제적 學術·體育·文化行事 지원, 남북한 貧民救濟事業 및 罷災民·水災民 救護事業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 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에게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共存共榮하여야 한다는 當爲性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한 길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研究支援 및 輿論收斂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학계·경제계·문화계·예술계 등 각 民間部門의 研究支援方案을 마련하여 교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분야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회·문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北韓 實態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研究事業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北韓研究를 위한 共同委員會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북한경제에 대한 통계자료의 빈곤이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우선 북한의 지하자원, 관광자원, 어족자원 및 인력자원에 대한 統計資料를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여 학계나 연구소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특히 민족학, 민족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學術研究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남북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가능하도록 財政的인 支援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북한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남북교류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國民的 合意點을 도출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교류 추진에 앞서 각종 세미나·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國民輿論을 수렴하고 동시에 정부의 政策을 弘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政治·經濟的 力量 強化

한국은 대내적인 統一基盤 확립을 위하여 經濟의 건실한發展과 政治民主화를 통한 사회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 경제력의 축적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남혁명 포기를 유도하고 나아가 낙후된 북한 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統一費用의 부담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社會福祉의 확충 및 지속적인 민주화 추진으로 국민 각 계층간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比較優位를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겠다. 사회 각계 각층은 국가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간의 괴리, 지역·세대·계층간의 갈등 등을 극복하고

正義社會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政治發展과 民主化만이 사회안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國力伸張의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일통일의 교훈에서 시사되듯이 주변국들과의 협조는 통일의 필수적 조건인 바, 統一支持基盤을 확대하기 위하여 國際的協力を 강화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사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강조하여 각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姜光植 編. 「南北 學術交流 與件診斷 및 對備策 摸索」.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 姜正模.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서울：對外經濟政策研究
院, 1991.
- 國土統一院. 「非政治的 分野의 南北交流 可能性과 國際的 仲
介 및 保障方案」. 서울：國土統一院, 1971.
- . 「南北交流問題 研究論文集」. 서울：國土統一院,
1972.
- . 「南北韓 社會文化交流 綜合對策」. 서울：國土統一
院, 1974.
- . 「북한의 언론·출판분야 사업총화집：1949~1970」.
서울：國土統一院, 1974.
- . 「北韓의 社會文化分野 提議에 對한 事例別 對應實
踐方案 研究」. 서울：國土統一院, 1984.
- . 「東西獨關係를 모델로 한 南北韓間 社會文化分野
의 交流協力 對策」. 서울：國土統一院, 1984.
- . 「南北韓 社會文化 및 藝術分野 交流方案」. 서울：
國土統一院, 1985.
- . 「南北經濟會談 關聯 北韓論調」. 서울：國土統一
院, 1985.

- _____. 「東西獨의 統一政策」. 서울: 國土統一院, 1985.
- _____. 「赤十字·經濟·國會·體育會談 關聯 雙方 主要發言
對比」. 서울: 國土統一院, 1986.
- _____. 「南北韓 經濟交流 協力의 摸索」. 서울: 國土統一
院, 1989.
- _____. 「東北亞 經濟圈과 南北韓 經濟協力에 關한 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1989.
- _____. 「分斷 45年 南北韓 經濟의 綜合的 比較研究」. 서
울: 國土統一院, 1990.
- 김문환. 「북한의 예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大韓商工會議所. 「北韓經濟의 實狀, 南北韓 經濟交流의 可能
性 및 對應方案」. 서울: 大韓商工會議所, 1990.
- 延河清. 「北韓의 經濟開放과 南北韓 經濟協力」. 서울: 大統領
諮詢 21世紀委員會, 1991.
- 유재천. 「북한의 언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李東輝. 「北韓의 開放 可能性: 對外 經濟關係를 中心으로」.
서울: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1991.
- 林陽澤. 「南北韓 產業 및 技術協力의 推進方案에 關한 研究」.
서울: 韓國經濟研究院, 1989.
- 제일경제연구소. 「南北韓 經濟協力과 企業의 對應戰略」. 서울:
제일경제연구소, 199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89」. 平양: 조선중앙통신
사, 1989.

-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서울: 통일원, 1990.
- _____.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서울: 통일원, 1990.
- _____. 「北韓概要」. 서울: 統一院, 1991.
- _____.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南北交流協力部門
 計劃 試案」. 서울: 統一院, 1991.
- _____.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서울: 統一院,
 1991.
- _____. 「'91 통일 환경변화 평가 및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
 색」. 서울: 統一院, 1991.
- _____. 「남북경제교류 실무편람」. 서울: 통일원, 1991.
- _____.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 제 5호 (1991).
-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經濟交流 促進을 위한 中長期 發展計
 劃(案)」. 서울: 韓國貿易協會, 1989.
- _____. 「南北韓 物資交易現況과 交易增進對策」. 서울: 韓
 國貿易協會, 1991.
-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서울: 한국수출
 입은행, 1991.
- _____.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 서울: 한국수
 출입은행, 1991.
- _____. 「北韓의 產業開發과 產業現況」.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 1991.

2. 論 文

- 강현두·이창현. “북한 방송의 철학적 기초와 사회적 기능.” 「방송문화」, 통권 94호 (1989. 4).
- 고영근. “남북한 언어·문자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1).” 「주 시경학보」, 제 2 권 (1988).
- 고영복. “남북한 사회체제의 변화와 통일문제.” 「統一政策」, 제 6 권 제3·4호 (1980).
- 김영주. “언론정책과 언론구조.” 고현욱 외. 「북한 사회와 구 조의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 박성조.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와 남북한 교류에 주는 시사점.” 「統一問題研究」, 제 1 권 4호 (1989).
- 박찬웅. “해외동포사회를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유도 방안.” 「통일한국」 (1991. 10).
- 변병문.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 「통일한국」 (1991. 7).
-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統一問題研究」, 제 2 권 4호 (1990).
- 윤병익. “南北韓 交流協力を 위한 機能主義的 接近.” 「統一論叢」, 제 4 권 제 2 호 (1984).
- 李秉龍. “統一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對備策.” 韓國發展研究院 政策포럼(1991) 發表論文.

- 이형교. “남북한 전기통신의 교류.” 「情報時代」 (1990. 10).
- 崔常喆. “南北體育交流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民族統一의
摸索」. 統一家族論文集 第1輯 (1989).
- 홍연숙, “남북한 언어개념의 이질화 연구.” 「南北韓 比較研究
論叢」 (서울: 國土統一院, 1977).